

# 가정 상담

통권506호

2025

10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 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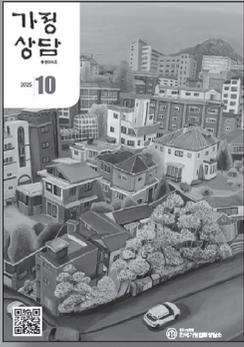


지난 9월 24일 본소 8층 교육실에서 직원재교육으로 <함께 영화보기>가 진행되었다. 상담소는 업무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강의, 문화적 경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인 직원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관련 기사 34면)

법의 생활화 운동을 바탕으로 두고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온 상담소에서 법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모습과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 모습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받으면 마음의 빛, 안 받으면 마음의 빛



- 4 • 이달의 메시지
- 6 • 기획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관 ①
- 20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 ⑩
- 22 • 가정폭력상담실
- 25 • 어떻게 할까요
- 28 • 결혼과 인생(246) 영화 이야기  
어쩔수가없다 \_ 김용언
- 30 • 좋은 책  
동물의 호의에는 이유가 없어서
- 31 • 연수 소감문
- 34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 37 • 소송구조



‘여성가족부’의 새로운 비전, ‘성평등가족부’ 출범에 앞서

##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에 대해 이해와 깊이 더한 정책 세워지길

나라의 곳곳을 살피고 그에 관한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각 부처는 사회상의 변화와 필요에 따라 그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행정업무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부처의 명칭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법무부로 출발한 법무부는 계속 법무부이지만, 오늘날 행정안전부는 내무부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몇 차례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새해부터 성평등가족부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여성가족부는 유난히 많은 논란과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였고, 제36조에는 혼인과 가족의 보호를 명시하여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하였으며 모성 보호 및 그와 관련한 여성 노동에 대한 보호 등 국가가 평등과 가족의 보호를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출범한 행정부처 가운데 사회부에 부녀국을 두어 여성정책을 처음으로 관장하도록 했으며, 1955년 보건사회부로 소속이 바뀌었다가 1963년에는 부녀아동국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1981년부터는 가정복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1994년에는 보건복지부로 조직의 개편이 단행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정무장관(제2실)에서 여성 관련 사무를 전담하기도 했고, 1998년 2월 당시 새 정부에서 정무제2장관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여성과 가족의 문제를 관장했는가 하면 이후 2001년에는 이를 여성부로 개편하여 정부부처가 됩니다. 이후 2004년에는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변화되었다가 2008년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당시 정부의 취지에 따라 존폐의 기로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폐지 대신 여성부로 축소되었고 2010년 여성가족부로 환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의 하나로 '여성가족부 폐지'가 거론되면서 부처의 폐지는 기정사실이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출범에 이어 지난 9월 10일 새로운 여성가족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국정과제를 확정하여 내놓았으며, 내년 2026년에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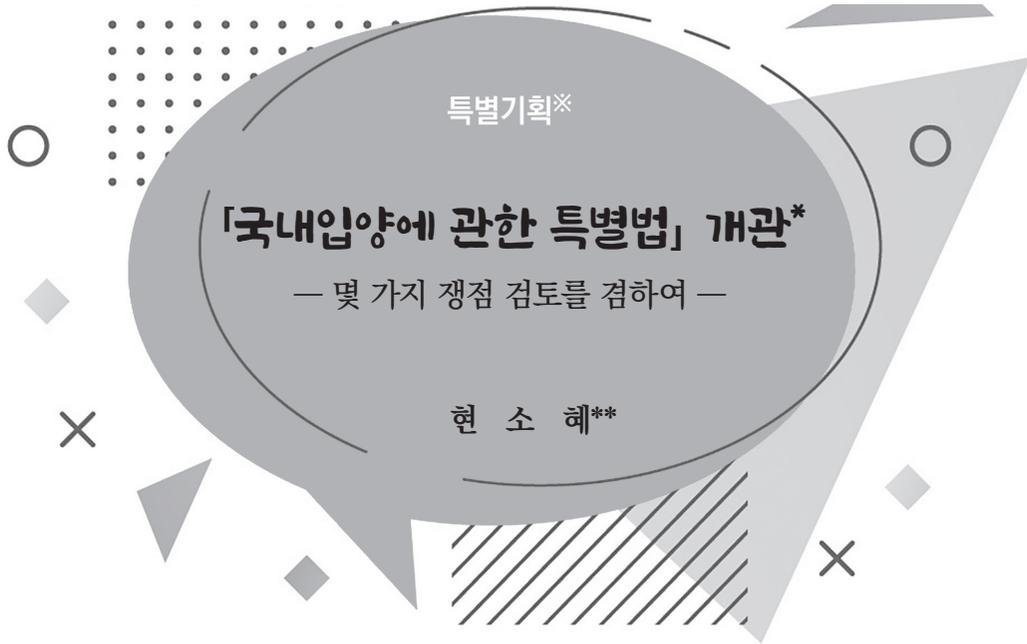
이처럼 여성과 가족에 관한 정부 부처의 방침과 변화만 보더라도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이 여성 및 가족정책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물론 여성과 가족에 대한 명백한 가치관 위에 일정한 방향성을 수립하고 그 방향으로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해 온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했다면 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가족에 대한 정책 전반과 성평등 정책을 책임지는 전담부서에 대해 이와 같은 사회적 논란이 거듭되고 부당하게 확대, 재생산되는 현실을 방치하거나 나아가 방조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 가족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현실을 파악하고 법과 정책, 제도와 관습 등 모든 방면에서 한발 앞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를 이끌어 대안을 끌어내 왔던 상담소로서는 이와 같은 가족정책의 표류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그동안 표류를 거듭해온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않고 지난 9월 10일 신임 장관을 임명하였으며 그동안 말썽의 소지가 있었던 명칭 또한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여 그 출범을 정식 선언하였으니 우선 정책적 안정성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밝힌 부처 주관 3대 과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그리고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등입니다. 모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과제입니다. 우리 사회와 사회를 이루는 모든 가정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이자 가족구성원인 국민 하나, 하나를 위해 이 모든 과제와 정책이 순조롭게 완수되고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나아가 발전적으로 완수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사람이나 사회 모두 마찬가지로 언제나 유동적이며 살아 숨 쉬는 유기체처럼 멈추는 일이 없기에 그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 법과 제도 등도 유연하게 사회의 변화에 따라 때로 앞서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으나 오랜 시간 관련 사업을 펼쳐온 현장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상담소를 찾는 내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례가 가장 절실한 법과 정책을 찾는 필요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 사람의 사연이 상담소와 같은 현장에 있으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가고자 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차 례

- I. 서론
- II. 연혁
- III. 국내입양특별법의 의의와 입양의 원칙
- IV. 국내입양의 성립과 관련된 법률관계
- V. 국내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 체계
- VI. 결론

### I. 서론

2025. 7. 19.부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내입양특별법’ 또는 ‘법’)이 시행되었다. 위 법은 기존의 「입양특례법」(이하 꺾쇠 생략)을 2023. 7. 18. 전부개정한 것이다. 본 논문은 법 시행에 맞추어 구체적인 개정 내용 및

그 취지를 소개하려는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이하에서는 먼저 전부개정에 이르기까지 보호 대상 아동을 위한 입양법의 연혁을 간략히 되짚어보고(II.), 법의 의의와 법이 택한 입양의 원칙을 소개하며(III.), 국내입양의 성립과 관련된 법률관계(IV.) 및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 체계(V.)를 새로운 국내입양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분설한다. 상세한 정보제공을 위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이하 ‘대법원규칙’)의 내용도 필요한 범위에서 함께 다룬다. 국내입양특별법의 내용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향후 실무 운용 과정에서 대두될 수 있는 쟁점들에 관해 간략한 해석론이나 입법 개선 의견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한편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과 국외입양<sup>1)</sup>을 하나의 법에서 함께 규율했던 것과 달리, 새로운 입양법제는 입양을 국

※ 편집자 주 - 본소 가족법 개정위원회 위원인 현소혜 교수의 최근 논문을 저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한다. 다만 지면 관계상 영문 표기, 영문초록, 참고문헌 등은 게재하지 않았다.

\* 본 논문은 2025. 7. 3. 법원행정처와 가족법연구회가 공동주최한 『입양제도 개편에 따른 재판실무의 변화 및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투고일 2025년 7월 6일, 심사일 2025년 7월 15일, 게재확정일 2025년 7월 21일.

1) 이때 국외입양이란 입양특례법 제18조에 따른 국내에서의 국외입양과 제19조에 따른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을 말한다. 입양특례법은 우리나라 아동이 외국인에게 입양되는 경우만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는 「민법」의 규정

내입양과 국제입양으로 나누어 전자는 국내입양특별법에서, 후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입양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사실 보호 대상 아동을 위한 대체 양육 수단으로서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므로, 법제상으로도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은 서로 연동하여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국제입양법이 선언하고 있는 국제입양 보충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입양특별법이 국내입양 우선추진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 국제입양법에 따른 국제입양 대상 아동으로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입양특별법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되었을 것을 요구하는 것 등은 두 법 간의 이러한 관계를 선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두 법을 통합하여 한꺼번에 서술하는 것이 조화롭겠지만, 국제입양법에 관해서는 이미 이를 소개한 선행 연구<sup>2)</sup>가 여럿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의 논의는 국내입양으로 한정하였다.<sup>3)</sup>

## II. 연혁

### 1. 舊 「고아입양특별법」

(1976. 12. 31.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국내입양특별법의 뿌리는 舊 「고아입양특별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위 법은 외국인 양부모가 고아들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입양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1961. 9. 30. 제정 및 시행되었다(제1조). 위 법의 특징은 주로 다음과 같다. ① 위 법에 따른 고아<sup>4)</sup>라면 설령 호주나 부모의 계통을 승계할 자라도 외국인의 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제2조 제2항).<sup>5)</sup> ② 위 법에 따른 고아를 입양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는 재산·품행·건강 등 「민법」(이하 꺾쇠 생략)<sup>6)</sup>보다 강화된 요건이 요구되었으며(제3조 제1항).<sup>7)</sup>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양에 앞서 법원으로부터 입양인가 결정을 받도록 하였다(제4조).<sup>8)</sup> ③ 이른바 ‘대리입양’을 허용하여 외국인은 일정한 기

---

이 적용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입양특별법은 국제입양 전반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제입양과 구별하여 ‘국외입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 2) 광민희, “국제입양법상 국외로의 입양 절차에 관한 검토”, 국제사법연구 제30권 2호(2024), 29-67면; 박주영, “국내 및 국제 입양법제의 변화 및 검토”,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8권 2호(2024), 102-118면; 석광현,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법학논총 제40권 3호(2023), 321-362면; 이종혁, “국제입양법에 따른 국내로의 입양의 요건과 절차”, 국제사법연구 제30권 2호(2024), 75-123면.
- 3) 국내입양특별법의 개정 경과와 내용에 관한 간략한 개관으로 박주영(2024), 89-101면 참조.
- 4) 舊 「고아입양특별법」상 고아란 부양의무자가 알려져 있지 않거나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얻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항).
- 5) 당시의 舊 민법(1990. 1. 13. 개정 전의 것) 제875조에 따르면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는 본가의 계통을 계승하는 경우 외에는 양자가 될 수 없었던 것과 대비된다.
- 6) 민법상 일반입양이 성립하기 위해 양부모는 성년자인 것으로 족하다(제866조). 단, 당시의 舊 민법(1990. 1. 13. 개정 전의 것)에 따르면 양부모될 자가 후견인으로서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제872조), 양부모될 자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며(제873조), 처가 있는 자는 공동으로만 입양을 할 수 있었다(제874조).
- 7)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되었다(舊 「고아입양특별법」 제3조 제1항): ①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을 것, ②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③ 품행이 단정하고 악질이 없을 것, ④ 양자를 천업, 고역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 있는 직업을 위하여 매매 또는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교육과 보호에 있어서 그 지역사회에 한 성원으로서 인정되는 상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는 서약과 이에 대한 본국 공공기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자의 보증이 있을 것.
- 8) 이는 미성년자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입양신고만으로 손쉽게 입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던 舊 민법(2012. 2. 10. 개정 전의 것)의 태도와 대비된다. 특히 舊 「고아입양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입양인가 결정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고아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그 입양신청을 해야 하며, 부양의무자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20일의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신문지와 법원계시장에 부양의무자의 신고를 최고하는 공고(이하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거쳐야 비로소 입양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1966. 2. 23.자 개정 舊 「고아입양특별법」은 고아의 주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입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15일로 단축하였고, 1975. 12. 31. 개정 舊 「고아입양특별법」은 고아의 주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입양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관으로 하여금 입양 절차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조).<sup>9)</sup> 1966. 2. 23.자 개정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입양알선기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어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만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sup>10)</sup> 입양아동의 국적취득에 관한 확인 및 보고 의무도 부여하였다(제5조).

舊 「고아입양특례법」은 한국전쟁 직후 급증한 고아들을 위한 국내의 아동복지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입양을 통해서라도 보호 대상 아동들에게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나름의 시대적 의의가 있으나,<sup>11)</sup> 위 법이 국외입양 절차의 간소화를 선언하면서 대리입양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양자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sup>12)</sup> 결국 1976. 12. 31. 舊 「입양특례법」이 제정되면서 舊 「고아입양특례법」은 폐지되었다.

## 2. 舊 「입양특례법」

(1995. 1. 5.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舊 「입양특례법」(1977. 1. 31. 시행)은 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이라면 고아가 아니라도 널리 위 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sup>13)</sup> 양부모될 자가 외국인인 경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도 위 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고아의 해외입양만을 대상으로 삼았던 舊 「고아입양특례법」과 차이가 있다. 위 법의 특징은 주로 다음과 같다.<sup>14)</sup> ① 시설 보호 중인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양부모는,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민법보다 강화된 자격 요건을 갖추 것을 요구하면서<sup>15)</sup> 입양신고에 앞서 입양알선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해 조사할 의무를 부여하였다(제6조 제2항 제2호 및 제11조). ② 입양 동의<sup>16)</sup>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면서 보호의뢰 시 부모가 입양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로써 입양 동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백

9) 김진, “고아입양특례법”, 서울대학교 법학 제4권 제1·2호(1962), 135면은 이를 ‘부재입양’이라고 표현한다. 대리입양 제도의 문제점에 관해서는 조소연/전민경, “입양제도와 보호출산제대상 아동권리의 사각지대 — 제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윤리연구 통권 제145호(2024), 150면 참조.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19가합502520 판결은 이러한 대리입양 제도가 헌법 제1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10)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알선 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이때 처음 신설되었다(1966. 2. 23.자 개정 舊 「고아입양특례법」 제10조 제1항).

11) 편집대표 윤진수/현소혜 집필부분, 「주해친족법」 제1권(제2판), 박영사, 2025(이하 ‘현소혜, 주해친족법’ 형태로 인용한다), 1028면; 홍정화·장지호, “입양정책에서 출생신고 의무제의 한계와 대안탐색: 개정 입양특례법(2011)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9권 제2호(2019), 33면 참조.

12) 김진(1962), 133-137면 참조.

13) 이 때 ‘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란 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에 있는 18세 미만의 자로서 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관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가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보호의뢰한 자, ② 부모가 입양을 동의하거나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의뢰한 자, ③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도지사가 보호의뢰한 자, ④ 기타 부양의무자가 알려져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주나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도 입양을 갈 수 있도록 하는 특칙을 둔 점은 舊 「고아입양특례법」과 유사하다(제2조 제2항).

14) 舊 「입양특례법」의 의의와 주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문헌으로 김주수,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의 필요성”, 한국사회복지학 제10권(1987), 137-143면 참조.

15)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요구되었다(舊 「입양특례법」 제3조): ① 양친될 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②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③ 양자를 천업·고역·기타 인권유린 우려가 있는 직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④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舊 「고아입양특례법」이 요구하였던 서약이나 보증 같은 절차적 요건은 폐지되었다.

16) 당시의 舊 민법(1990. 1. 13. 개정 전의 것) 제870조 및 제871조에 따르면 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다른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지식 동의' 제도<sup>17)</sup>를 도입하는 한편(제4조), 양자의 성·본에 관한 특례 및 입양취소 사유 제한 규정을 두어<sup>18)</sup> 국내입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였다. ③ 해외 입양을 국내에서의 국외입양과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으로 나누어 규율하면서 후자의 경우에는 입양알선 기관의 입양알선과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만으로 손쉽게 보호 대상 아동을 입양해 갈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제9조).<sup>19)</sup>

舊 「입양특례법」은 시설 입소 중인 아동을 위해 입양알선 기관이 양부모 가정조사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양부모와 입양을 알선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입양 제도가 가계 계승의 수단을 넘어 아동보호 전달 체계의 일부로서 자리잡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나, 외국으로의 국외입양 절차를 지나치게 간소화한 결과 아동의 복리를 해하였다는 점, 입양의 활성화와 촉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정작 입양 후 사후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sup>20)</sup>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sup>21)</sup> 이에 위 법은 1995. 1. 5. 舊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

례법」(이하 '舊 입양촉진특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

### 3. 舊 입양촉진특례법

(2011. 8. 4.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舊 입양촉진특례법(1996. 1. 6. 시행)은 1991. 12. 20.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sup>22)</sup>(이하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에 따라 입양보다는 원가정 양육이, 시설보호보다는 가정형 보호가 우선되어야 함을 선언한 최초의 국내법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제3조). 위 법은 이러한 맥락에서 법의 적용 대상을 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으로부터 요보호아동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sup>23)</sup> 舊 「입양특례법」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여 몇 가지 중요한 개선을 하였다. 그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다. ① 양부모의 자격 요건에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부분이 신설되고(제5조 제1항 제3호),<sup>24)</sup> 하위법령을 통해 양부모가 될 자의 연령 및 혼인·자녀에 관한 요건이 추가되는 등 양부모될 자의 자격이

17) 이와 같이 백지식 동의 제도에 입각하여 양부모될 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입양절차가 진행되는 '익명입양' 구조의 특성과 문제점에 관해 자세히는 현소혜, “익명입양 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민사법학 제50호(2010), 547-556, 575-585면 참조.

18) 가령 위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양부모가 원하는 경우에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7조), 입양되어 1년이 경과된 때에는, 약취 또는 유인에 의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자가 양자로 된 경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입양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5조). 양친자관계의 조속한 안정이라는 취지에서 입양취소 사유의 제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문헌으로 김주수(1987), 139면 참조.

19) 반면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절차에는 여전히 가정법원의 입양인가 심판을 요구하였다(제8조). 다만, ① 외국인이 후견인과 함께 입양인가를 신청하도록 하였다는 점, ② 양자로 될 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도록 하였다는 점, ③ 부양의무자 확인 절차를 법원에서 직접 진행하는 대신 필요한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같음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舊 「고아입양특례법」과 차이가 있다.

20) 김상용,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개선방향 — 국내입양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제23권 제2호(2009), 218면.

21) 특히 舊 「입양특례법」은 舊 「고아입양특례법」과 달리 해외입양 시 입양알선기관의 국적취득 보고 의무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舊 「입양특례법」상으로도 입양알선기관에 국적취득 보고 의무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위 법에 따라 성립한 입양에 관해 입양기관이 보호의무 및 국적취득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입양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던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19가합502520 판결 참조.

22)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1989년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총 194개국이 비준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조약이다.

23) 舊 입양촉진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에는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자로서 ①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으로 약칭한다)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②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자, ③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도지사등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④ 기타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등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가 포함된다(제2조 및 제4조).

24) 반면 舊 「입양특례법」상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은 자격 요건에서

강화되었다.<sup>25)</sup> ② 기존의 ‘입양알선기관’을 ‘입양기관’으로 명칭 변경하면서 입양 전 양부모될 자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 및 입양성립 후 6월까지 양부모와 양자 간의 상호 적응 상태에 관한 사후관리 제공 의무를 부여하였다(제12조 제4항 및 제5항 본문).<sup>26)</sup> ③ 입양 대상 아동이 미아인 경우 등에 해외이주허가를 제한하여 무분별한 해외입양을 막는 한편(제17조 제3항),<sup>27)</sup> 당시 거의 100% 국제입양의 대상이 되어 왔던 장애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을 두어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제23조 제1항), 입양알선이 곤란한 경우에 시·도지사등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시설보호 등 국내에서 필요한 보호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제15조).

舊 입양촉진특례법은 사전교육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

국내입양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舊 입양특례법보다 진전된 것이었으나, 세 차례에 걸친 개정<sup>28)</sup>에도 불구하고 입양기관의 알선과 입양신고만으로 손쉽게 입양이 성립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sup>29)</sup> 행정부는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통해 간접적·사후적으로 입양 절차에 관여할 뿐이었으며, 개별 입양 사건의 적법성이나 적절성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관행으로 인해 입양 대상 아동의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도 심각하였다. 이는 입양 허가제의 도입을 요구하는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항<sup>30)</sup>의 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도 하였다.<sup>31)</sup> 이에 입법자는 2011. 8. 4. 舊 입양촉진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제외되고 대신 별도의 의무 규정으로 전환되었다(제5조 제2항).

- 25) ① 양부모될 자가 25세 이상 55세 미만일 것(단, 양부모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일 것), ② 양부모될 자에게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일 것, ③ 양부모될 자가 혼인 중일 것이라는 요건이 그것이다(시행규칙 제2조). 단, 가정조사 결과 양부모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도 입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이 중 ①의 요건은 1999. 5. 19.자 개정 시행규칙에 의해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 차이가 50세 미만인 자로, 2006. 12. 11.자 개정 시행규칙에 의해 다시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 차이가 60세 미만인 자로 완화되었으며, ② 및 ③의 요건은 2006. 12. 11.자 개정 시행규칙에 의해 폐지되었다.
- 26) 이에서 더 나아가 입양기관은 국외입양의 경우에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사후관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입양인에 대해서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모국방문사업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제12조 제5항 단서 및 제6항).
- 27) 위 조항은 ① 양자로 될 자가 미아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 외에 ②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③ 입양을 원하는 국가가 대한민국과 전쟁상태 또는 적대상태에 있는 국가인 경우에도 보건사회부장관이 해외이주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28) 개정의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다. ① 1999. 1. 21. 개정된 舊 입양촉진특례법(1999. 4. 22. 시행)은 국내외 입양기관 간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 체결 시 사전승인 절차를 사후보고 절차로 같음하고, 입양기관 종사자의 교육훈련 제도를 폐지하는 등 입양업무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불법입양의 근절을 위해 허가 없이 입양알선업무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하였다. ② 2004. 3. 5. 개정된 舊 입양촉진특례법(2004. 9. 6. 시행)은 국내입양 촉진을 위해 장애아동이 아닌 일반아동 입양 시에도 양육수당 및 중개수수료 기타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③ 2005. 3. 31. 개정된 舊 입양촉진특례법(2005. 10. 1. 시행)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의 원가정 양육 지원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한편,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와 적응을 위해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각종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하며, 입양기관의 입양알선비용 수납 및 양부모에 대한 입양알선 소요 비용 보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29)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문헌으로 장병주, “개정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개정민법과 입양특례법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 41권(2013), 503-504면.
- 30)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항은 “아동의 입양은, 적용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면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번역은 관보 게재를 따랐다(이하 동일).
- 31) 이에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위 조항에 대한 유보 철회와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관행 근절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CRC/C/KOR/CO/1, paras. 19, 22; CRC/C/KOR/CO/2, paras. 9-10; CRC/C/KOR/CO/3-4, paras. 9, 49-50.

로 전부개정하면서 입양법 체계의 대개혁을 꾀하였다.

#### 4. 입양특례법

(2023. 7. 18.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2012. 8. 5.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은 그 범명과 목적 조항으로부터 ‘입양의 촉진’을 제외하는 한편(제1조), 입양에 관해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천명함으로써(제4조) 위 법의 목적이 입양의 활성화보다는 입양 대상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 법은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개선을 단행하였다.<sup>32)</sup>

첫째, 보호 대상 아동<sup>33)</sup>을 입양하려는 자는, 국내입양·국내에서의 국외입양·외국에서의 국외입양을 불문하고 언제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입양 허가 청구 시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 방식에 의한 입양 관행을 근절하였다(제11조, 제18조 및 제19조).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7. 8. 11. 드디어 UN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였다.<sup>34)</sup>

둘째, 입양 동의의 요건 및 동의 면제 사유, 철회 등에 관한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특히 입양 동의나 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제12조 제6항),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간 숙려기간을 보장하고,<sup>35)</sup> 입양 동의

의 대가로 금전 등 수수를 금지하며, 입양기관은 입양 동의 전 친생부모나 아동 본인에게 원가정 양육 등에 관해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였다(제13조).<sup>36)</sup> 당시 입양기관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미혼모에게 출산 전후에 부당한 입양 권유를 해 오던 관행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미혼모의 입양 동의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sup>37)</sup>

셋째, 양부모가 될 자격 요건에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을 추가하는 한편(제10조 제1항 제3호),<sup>38)</sup> 위 법에 따른 입양에 친양자입양의 효과를 부여하고(제14조), 입양 취소 사유 및 재판상 파양 사유 역시 친양자입양에 준하여 제한하는 등(제16조 및 제17조) 양친자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녀를 위한 입양’의 관점에서 2005. 3. 31. 개정 민법에 도입된 친양자입양의 정신<sup>39)</sup>이 위 법에도 반영된 것이다.

넷째,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시행 및 국외입양 감축 노력 의무에 관한 근거 조문이 신설되었다(제7조 제1항 및 제8조). 이에 따라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을 국내에서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친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타 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국내입양을 추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부모 되려는 사람을 찾지 못한 경우에만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제7조 제2항 내지 제4항).

32) 「입양특례법」 전면개정의 취지에 대해 자세히는 김상용, “개정 「입양특례법」의 특징”, 법률신문 제4050호(2012), 14면; 홍정화·장지호(2019), 35-36면 참조.

33) 그 범위에 관한 입양특례법 제9조의 내용은 舊 입양촉진특례법 제4조와 동일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주 23) 참조.

3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1조 가항에 대한 유보 철회」(2017. 8. 11. 발효, 2017. 9. 5. 공포) 참조.

35) 숙려기간 도입을 주장한 견해로 김상용(2009), 230-231면 참조.

36) 舊 입양촉진특례법 제12조 제1항 역시 2005. 3. 31.자 개정에 의해 입양기관의 장에게 입양상담 제공 의무를 부여한 바 있으나, 상담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입양상담의 내용에 원가정 양육에 관한 상담이 포함되어야 함을 시행령 대신 법률에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7) 한편 입법자는 입양기관에 의한 부당한 입양 권유를 방지하고자 2011. 4. 12.자 개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4항을 통해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1헌마363 결정은 위 조항이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38) 또한 입양특례법 제10조 제3항은 양부모가 되려는 자는 사전에 입양기관으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舊 입양촉진특례법상 입양기관의 의무에 불과하였던 교육의무를 양부모되려는 자의 의무로 격상시켰다.

39) 친양자입양 제도의 도입 취지에 관해 자세히는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바87 결정 참조.

입양정보 공유를 위해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도 구축되었다(제6조).<sup>40)</sup>

다섯째,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록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정보가 공개되도록 하기는 하였으나, 입양정보공개청구권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한편(제36조),<sup>41)</sup> 입양기관의 사후서비스 제공 의무를 확대·강화하고(제25조),<sup>42)</sup> 국내입양의 활성화와 사후관리·친가족 찾기 등을 위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중앙입양원을 설립하는 등(제26조) 입양법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병행하였다.

입양특례법은 아동권리협약의 기준에 부합하는 입양법제를 구축하고, 입양의 촉진보다는 입양아동과 친생모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위 법은 개정 직후 입양 전 출생신고 의무화로 인한 사생활의 노출을 우려한 미혼모들의 반발을 야기하고, 베이비박스에의 아동 유기를 조장하였다는 등 큰 논

쟁에 휩싸이기도 하였으나,<sup>43)</sup> 몇 차례의 소소한 개정<sup>44)</sup>과 2019년 「아동복지법」(이하 꺾쇠 생략) 개정<sup>45)</sup>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아동권리보장원<sup>45)</sup>으로의 통합 외에는 큰 틀에서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 5. 아동복지법 개정<sup>45)</sup>에 따른 변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과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쟁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 유기의 불법성과 출생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아동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원가정 양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법 제9조 제2호는 여전히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하면서 입양기관에 보호를 의뢰하기만 하면 즉시 입양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있고, 입양 가능성에 대한 별도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가정 양육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

40) 2020. 12. 29.자 「아동복지법」 개정<sup>45)</sup>에 의해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제도가 도입되면서 ACMS의 근거조문이었던 입양특례법 제6조는 삭제되었으며, ACMS 상의 입양정보는 모두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합되게 되었다.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및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을 연계·활용하여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행복이음 및 희망이음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기존에 분야별로 흩어져 있던 아동 관련 정보 시스템들이 아직 완전히 통합된 것은 아닌 상황이다.

41) 입양특례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舊 중앙입양원(現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에게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입양정보 전부를, 동의하지 않으면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제36조 제1항 및 제2항). 단, 친생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동의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제36조 제3항). 이러한 구조의 입양정보공개청구권 제도를 제안한 견해로 김상용(2009), 249-251면 참조.

42) 입양특례법 제25조는 사후관리 기관을 1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사후관리의 내용 역시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 상태에 관한 관찰 외에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수시 상담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등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舊 입양촉진특례법과 차이가 있다.

43) 이러한 논란을 소개하고 있는 문헌으로 권재문, “입양특례법 재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베이비박스와 익명출산—, 법학연구 제22권 1호(2014), 71-75면; 신옥주,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한적 익명출산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25권 제4집(2014), 337-339면; 엄주희, “영아의 생명권을 위한 규범적 고찰”, 서울법학 제23권 제3호(2016), 107-108면; 윤진숙, “현행 입양특례법에 대한 소고 — 미국 입양법과 비교를 통한 미혼모와 입양아의 인권 보호—, 법학연구 제24권 4호(2014), 168-174면; 장병수(2013), 524-525면; 홍정화·장지호(2019), 26-28, 37-40면 등 참조.

44) 그 중 주요한 개정으로 ① 국외입양의 경우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의무를 면제하였던 제25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국외입양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 및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2015. 5. 18.자 입양특례법 개정 및 ② 입양기관이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또는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입양 동意的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 규정을 신설한 2024. 1. 23.자 입양특례법 개정<sup>45)</sup>을 들 수 있다.

45)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립한 법인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설치근거 및 업무 범위에 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참조.

이 제기되었다.<sup>46)</sup> 이러한 배경하에 2020. 12. 29. 개정 아동복지법(2021. 3. 30. 시행)은 보호 대상 아동을 위한 입양시스템에 또 한 번의 중요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입양기관이 보호자로부터 입양의뢰를 받은 때에는 먼저 지체 없이 시·도지사등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등이 원가정양육 등에 관한 상담과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입양절차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이로써 입양특례법상 입양은, 부모의 입양 대락 의사에 따라 아동의 운명이 좌우되는 민법상 계약형 입양 제도와 달리, 보호 대상 아동을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아동보호 전달체계의 한 축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다.

### III. 국내입양특별법의 의의와 입양의 원칙

#### 1. 국내입양특별법의 의의

##### 가. 입법 경위

입양특례법의 재개정은 2011. 8. 4. 전부개정 당시부터 예정된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당시에 이미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sup>47)</sup>에 따라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sup>48)</sup>(이하 ‘헤이그입양협약’)에 가입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헤이그입양협약에 맞추어 국제입양 절차를 개편하려면 입양특례법상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및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에 관한 규정들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2013. 5. 24. 헤이그입양협약에 서명한 직후부터 협약 비준 및 관련 법안의 제·개정 준비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T/F와 실무준비반의 구성, 토론회, 공청회 및 법안 제출<sup>49)</sup> 등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 시도는 좌절되었다. 헤이그입양협약의 기준에 부합하는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종래 전적으로 입양기관에게 맡겨져 왔던 국제입양 업무를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입양기관의 역할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헤이그입양협약 서명 10년 만인 2023. 7. 18. 드디어 입양특례법을 전부개정한 국내입양특별법과 국제입양법이 공포되었고, 2025. 7. 19.부터 시행되었다. 국내입양특별법의 주된 의의는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나.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의 준별

국내입양특별법은 입양특례법 중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및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에 관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국제입양에 관한 규율을 국제입양법에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법체계와 중대한 차이가 있다. 특히 유의할 것은 국내 입양과 국제입양의 개념이다. 국제적 요소가 있는 입양 중

46) 소라미, “입양아동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제안”, 가족법연구 제32권 제1호(2018)(이하 ‘소라미(2018a)’ 형태로 인용한다), 314면; 소라미, “한국에서의 입양제도 현황과 과제”, 가족법연구 제32권 제3호(2018)(이하 ‘소라미(2018b)’ 형태로 인용한다), 11-12면; 현소혜, “헤이그 입양협약 가입에 따른 국제입양절차 개편방안”, 가족법연구 제28권 제2호(2014), 107-109면; 현소혜, “국제입양의 보충성과 투명성 실현방안”, 가족법연구 제35권 제1호(2021), 203-204면.

47) CRC/C/KOR/CO/3-4, para.50 참조. UN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에도 동일한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CRC/C/KOR/CO/5-6, para.33 참조.

48)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의 의의 및 주된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문헌 중 대표적으로 김문숙,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 한국의 가입가능성의 관점에서”, 국제사법연구 제10호(2004), 379-397면; 석광현, “1993년 헤이그국제입양협약(국제입양에 관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국제사법연구 제15호(2009), 423, 427-454면; 윤성승·허남순,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비추어 본 국제입양 관련법의 개선방안”, 법과 기업 연구 제4권 제2호(2014), 4-13면; 장복희,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국내입양법의 개선”, 저스티스 통권 제93호(2006), 226-228면; 현소혜(2014), 69-97면 등 참조.

49) 헤이그 입양협약 비준과 관련해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분석하고 있는 문헌으로 현소혜(2021), 191-203면 참조.

어디까지를 국내입양특별법에서 규율하고, 어디부터를 국제입양법에서 규율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있어 왔다. 일부 개정안은 입양에 의해 상거소국의 이동이 발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양부모 또는 양자 중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 역시 상거소국의 이동과 무관하게 국제입양으로 볼 것을 제안한 바 있으나,<sup>50)</sup> 국제입양법 제2조 제6호는 헤이그입양협약 제2조 제1항에 따라 입양을 위해 또는 입양의 결과로 아동의 상거소가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경우만을 국제입양법의 대상으로 삼았고, 국내입양특별법 역시 이에 맞추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일상거소와 아동의 일상거소가 모두 대한민국에 있어, 입양의 결과로 아동의 일상거소가 다른 국가로 이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입양”을 국내입양으로 정의하였다(제2조 제4호).<sup>51)</sup> 따라서 입양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사안을 비롯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인 보호 대상 아동을 입양하는 사안은 두루 국내입양특별법의 규율 대상이 된다.<sup>52)</sup>

## 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국내입양특별법은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조문들을 대폭 보강하였다. 헤이그입양협약과 국제입양법이 추구하고 있는 국제입양 보충성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보호 대상 아동을 위해 충분한 국내입양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내입양특별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입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제10조),<sup>53)</sup> 그 시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제11조). 또한 국내입양특별법은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sup>54)</sup> 결연 및 국제입양법에 따른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입양정책위원회에 국내입양분과위원회 및 국제입양분과위원회를 두어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로써 위원회 심의·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8조).<sup>55)</sup>

50) 가령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18429, 신경림 의원 대표 발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2466, 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17051,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5361, 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 등 참조.

51) 국적과 무관하게 상거소의 이동이 있는 경우만을 국제입양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 김상찬·신준연,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법무 제11권 2호(2019), 100-101면; 윤성승·허남순(2014), 20면; 현소혜(2014), 109면 참조. 국내입양특별법과 같은 입장에서 상거소의 이동이 있는 경우만을 국제입양으로 볼 것을 제안하였던 법안으로 「국제입양법안」(의안번호 2112826, 김성주 의원 대표 발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3454,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참조.

52) 같은 취지로 이종혁(2024), 87면.

53)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는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2조 참조. 또한 기본계획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법 제10조 제3항).

54) 입양정책위원회는 ③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②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③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④ 입양 절차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결연에 관한 사항, ⑥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결연에 관한 사항, ⑦ 법 제18조 및 국제입양법 제9조 제2항·제20조 제2항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에 관한 사항, ⑧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제도 간 조정에 관한 사항, ⑨ 입양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 간의 역할과 기능의 정립에 관한 사항, ⑩ 그 밖에 국내입양 활성화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법 제1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 보다 구체적인 위원회 운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법 제12조 제3항 내지 8항 및 시행령 제5조 내지 제9조 참조.

55) 국내입양분과위원회는 ① 국내입양특별법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에 관한 사항, ② 결연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국내입양의 요건 및 절차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국제입양분과위원회는 ①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국제입양법에

## 라. 공적 입양 체계로의 개편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은, 입양기관이 한편으로는 친생 부모로부터 입양을 의뢰받은 아동을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입양알선을 문의하는 자들에 대해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 법에 따른 양부모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당해 입양기관에서 보호 중인 아동 중 한 명과 결연(結緣, matching)해 주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구조는 일종의 쌍방대리로서 이해상반의 위험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sup>56)</sup> 입양이 신속하게 많이 성립할수록 입양알선 보조금<sup>57)</sup> 등 수입은 증가하고, 아동보호 비용은 절감할 수 있으므로, 입양 기관으로서는 입양 대상 아동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친생 부모에게 입양 동의를 부담하게 권유하거나, 입양이 곤란한 연장 아동이나 장애아동의 인수를 처음부터 거부하거나, 예비 양부모에 대한 가정환경 조사를 요식적으로 하거나, 예비 양부모가 희망하는 아동을 선별하여 결연해 주는 등 아동의 최선의 이익보다는 입양의 촉진을 업무 지침으로 삼을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입양기관이 전적으로 수행해 온 아동 보호기능과 예비 양부모 조사 기능, 결연 기능을 서로 다른 기관에 분배하여 이해상반의 상황

을 타개하고, 국가에 의한 개입과 공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sup>58)</sup> 그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 기능을, 입양기관이 예비 양부모 관련 기능을, 보건복지부 등 공적 기관이 결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견해<sup>59)</sup>와 입양기관이 아동보호와 결연 기능을, 아동권리보장원이 예비 양부모 관련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는 견해<sup>60)</sup> 등이 대립해 왔는데, 국내입양특별법은 최종적으로 친생부모와의 입양 상담 및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하고(제13조), 양부모 되려는 자에 의한 입양신청 접수 및 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맡도록 하며(제19조), 결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하는 방안(제20조)을 택함으로써 종전의 민간단체 주도의 입양 체계를 공적 입양 체계로 개편하였다.<sup>61)</sup>

## 마. 입양기관 제도의 폐지

II.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양기관의 역할과 책임은 입양법의 발전과 함께 점차 확대되어 왔다. 입양기관은 舊 「고아입양특례법」 제5조에 따라 ‘입양알선기관’으로서 처음으로 그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으며, 주로 입양의 알선과 입양 대상 아동에 관한 가정조사서 작성, 입양 동의 관련 서

---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에 관한 사항, ③ 결연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국제입양의 요건 및 절차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관할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관해 자세히는 시행령 제8조 참조.

56) 이 점에 대해서는 현소혜(2021), 178, 182, 189면도 참조.

57) 입양기관은 양부모될 자로부터 입양 알선에 드는 인건비, 아동양육비, 입양 알선절차에 드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입양 알선비용을 수납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부모 될 사람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입양특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6조).

58) 같은 취지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소라미(2018a), 314면; 소라미(2018b), 10-11면; 현소혜(2021), 203-220면 참조.

59) 가령 소라미(2018a), 315면; 소라미(2018b), 11-12면; 신윤정,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대응한 국내 입양 체계 개편 방안”,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53호(2018), 4-5면. 이와 유사하게 아동보호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속시키고, 입양기관에는 양부모 관련 기능만 부여하고자 하였던 개정안으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18429, 신경림 의원 대표 발의) 참조.

60) 현소혜(2021), 213-217면. 이와 유사하게 인가단체(입양기관)에 아동보호 기능을 일부 인정하고자 하였던 개정안으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02466, 김승희 의원 대표 발의) 참조.

61) 이 점에서 국내입양특별법의 의의를 찾는 문헌으로 조소연·전민경(2024), 148면; 이와 유사하게 아동보호 기능과 양부모 관련 기능을 모두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사고를 담고 있는 개정안으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17051,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3454,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참조. 이와 정반대의 입장에서 입양기관이 여전히 아동보호 기능 및 양부모 관련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였던 개정안으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21483, 김세연 의원 대표 발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5361, 김미애 의원 대표 발의) 참조.

류의 확보, 해외입양 후 국적취득 보고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sup>62)</sup> 당시에는 입양알선을 목적으로 보건사회부에 등록된 외국인간원조단체도 위 법에 따른 입양알선기관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舊 「입양특례법」은 외국인이 입양알선기관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입양알선기관이 양친이 될 자에 대한 가정조사도 담당하도록 규정하였다.<sup>63)</sup> 舊 입양촉진특례법은 입양알선기관의 명칭을 입양기관으로 변경하고, 입양기관을 국제입양기관과 국내입양기관으로 이원화하는 한편, 입양기관에 양부모에 대한 사전교육 및 입양 사후관리 등에 관한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였으며,<sup>64)</sup> 입양특례법에 의해 그 의무 범위가 입양종사자 보수교육 및 입양 업무 기록, 입양정보공개까지 확장되었다.<sup>65)</sup>

그러나 국내입양특별법은 입양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장관 등으로 분산시키면서 입양기관에 관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였으므로, 입양기관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① 입양 대상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복지서비스 지원 및 양육상황 점검보고서 작성, ② 국제입양 대상 아동에 대한 정보의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입력·관리, ③ 양부모가 되려는 자에 대한 상담·가정환경 조사 및 그에 관한 보고서 작성, ④ 입양 사후서비스 제공 및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sup>66)</sup> 부칙 제13조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을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은 부칙과는 별개로 관련 업무를 위탁받기 위해 일정한 시설기준 및 인력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sup>67)</sup> 기존 입양특례법에 따른 모든 입양기관이 당연히 입양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2. 입양의 원칙

국내입양특별법은 아동권리협약 및 헤이그입양협약의 정신에 따라 국내입양에 관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① 원가정 양육 및 가정형 보호 제공의 원칙, ②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③ 아동의 의견청취, ④ 비영리의 원칙이 그것이다.<sup>68)</sup> 입양특례법이 아동 최우선의 원칙만을 입양의 원칙으로 선언하고, 원가정 양육의 원칙은 국가의 책무 차원에서 규정했던 것과 대비된다.

### 가. 원가정 양육 및 가정형 보호 제공의 원칙

원가정 양육 및 가정형 보호 제공의 원칙은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 및 제20조<sup>69)</sup>에 기초하여 舊 입양촉진특례

62) 舊 「고아입양특례법」 제5조 제4항; 舊 「고아입양특례법시행령」 제2조 및 제6조 참조. 당시 입양알선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아동 상담원·심리학자·의사·간호원·사무직원 등을 두고, 사무실 상담실과 아동일시보호시설을 갖추어 있어야 하며, 운영자본금 300만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했다(舊 「고아입양특례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63) 舊 「입양특례법」 제10조 제3항 및 제11조 제1항 참조. 그밖에 舊 「입양특례법」 제11조 제2항은 입양을 위하여 입양될 자의 성명·사진 또는 신분증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64) 舊 입양촉진특례법 제10조 및 제12조 참조.

65) 입양특례법 제20조; 제21조 및 제36조 참조. 舊 입양촉진특례법 제11조 역시 한 때 입양종사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훈련 조항을 두고 있었으나, 1999. 1. 21. 개정 당시 입양업무에 관한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위 조항을 폐지한 바 있다.

66) 국내입양특별법 제37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 제2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67) 시행령 제22조 제2항 및 별표 1은 시설기준으로서 ①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용공간(상담실)과 ② 상담받는 사람의 신분, 사생활 및 상담내용 등의 노출을 막기 위한 칸막이, ③ 녹음기, 카메라 등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장비, ④ 책상, 전화기, 컴퓨터, 복사기 등 사무처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을, 인력기준으로서 일정한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① 팀장 1명을 포함하여 ② 상근직 전담인력 6명 이상을 위탁 업무에 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입양 관련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은 더 낮아서 시설기준으로 위 ① 내지 ④ 및 인력기준으로서 일정한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을 갖춘 상근직 담당인력을 1명 이상 둘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국제입양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별표).

68) 그밖에 국내입양특별법 제6조 제3항은 입양아동 차별금지에 관한 조문도 신설하였으나, 아직 국가의 책무 단계에 불과하고, 입양의 원칙으로까지 격상된 것은 아니므로, 본 글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았다.

69) 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모든 아동에게 가능한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권리를, 제20조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했

법 시절부터 계속 규정되어 오던 것으로서 조문 위치가 입양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으로부터 입양의 원칙에 관한 국내입양특별법 제3조 제1항 및 국가의 책무에 관한 제6조 제1항 전단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입양에 앞서 원가정 양육 가능성 심사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sup>70)</sup> 특히 법 제6조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제1항 후단),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없다면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바(제2항), 단순히 원가정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다른 가정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입양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입양과 같은 영구적 가정 보호가 다른 아동 보호조치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입양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시설 보호보다는 가정위탁과 같은 가정형 보호가 우선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내입양특별법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제15조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아동권리협약을 관통하는 제1의 원칙은 ‘아동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이다. 아동권리협약 제3조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

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입양특례법 제4조 역시 이러한 협약의 정신을 반영하여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왔다. 이를 이어받아 국내입양특별법 제1조는 법의 목적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법 제3조 제2항 역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입양의 원칙으로 선언하였다.

이와 관련해 국제입양 보충성의 원칙<sup>71)</sup>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국제입양법 제3조 제1항은 아동권리협약 제21조 b항<sup>72)</sup> 및 헤이그입양협약 제4조 b항<sup>73)</sup>의 정신을 반영하여 종래 입양특례법상 국가의 책무에 불과하였던 국제입양 보충성의 원칙을 입양의 원칙으로 격상시켰으며, 국내입양특별법 역시 국내입양 우선추진제(제7조 제1항) 및 국외입양 감축을 위한 국가의 책무(제6조 제5항) 규정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입양 보충성의 원칙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만약 그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오히려 아동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같은 이유에서 헤이그입양협약 제4조 b항 및 국제입양법 제3조 제1항 역시 국제입양의 최종 판단기준을 국제입양의 보충성이 아니라 아동 최선의 이익에 두고 있다.<sup>74)</sup>

이 점을 절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내입양특별법은 국내입양 우선추진의 구체적 방법을 규정하고 있었던 입양특례법 제7조 제2조 내지 제4항<sup>75)</sup>을 삭제하고, 국내에서 적합한 양부모가 될 사람을 찾지 못한 경우에만 국제입양

거나 가정환경에 남아 있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아동을 위해 입양·가정위탁·아동보호시설 등 대안 양육을 제공해 주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70) 이 점에 대해 자세히는 현소혜(2021), 173-175, 177면 참조.

71) 국제입양 보충성의 원칙이란 국제입양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국제입양은 아동의 상거소지를 인종적·문화적·사회적·종교적 배경이 전혀 다른 국가로 강제 이동시킴으로써 입양아동의 적응과 정체성 확립에 비상적으로 큰 어려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경제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입양의 공급국과 수요국이 분리되면서 아동 매매나 납치·비자발적 입양 등의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여 아동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자세히는 현소혜(2014), 70면; 현소혜, “국제입양의 준거법 결정”, 국제사법연구 제24권 제2호(2018), 90면; 현소혜(2021), 175-176면 등 참조.

72) 아동권리협약 제21조 b항은 “국제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73) 헤이그입양협약 제4조 b항은 “국제입양은 출신국 내에서의 아동의 위탁가능성을 적절히 고려한 후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된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74) 이 점에 대해 자세히는 현소혜(2021), 175-177면.

75)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II.4.의 서술 참조.

을 추진할 수 있다는 추상적 규정만 두는 대신, 국제입양법에 실질적 심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입양특례법 시절과 같이 국내입양을 시도한 기간이나 횟수를 기준으로 국제입양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형식적 심사<sup>76)</sup>는 오히려 아동 최선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국내입양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국내입양의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아동 중 국제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sup>77)</sup>을 거쳐 해당 아동을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국제입양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sup>78)</sup>

#### 다. 아동의 의견 청취

아동권리협약 제12조<sup>79)</sup>는 이른바 ‘4대 핵심 원칙’의 하

나로 ‘아동의 견해 존중’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sup>80)</sup> 입양은 아동의 친권자와 양육 환경에 결정적이고 불가역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이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헤이그 입양협약 제4조 d항<sup>81)</sup>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같은 이유에서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항은 시·도지사등이 입양의 보호조치를 할 때 해당 보호 대상 아동의 연령과 무관하게 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민법 및 「가사소송법」은 입양의 성립과 관련하여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거나 그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상당히 인색한 편이었다.<sup>82)</sup> 입양특례법 역시 재판상 파양 시 13세 이상의 입양아동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17조 제2항).

이에 국내입양특별법 제4조는 “이 법에 따른 입양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의견

- 
- 76) 입양특례법 시절 매뉴얼에 따라 입양기관은 ACMS를 통해 예비 양부모될 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입양 동의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입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국외 입양을 추진해 왔다. 한 때는 5개월간 3명 이상의 예비 양부모와 3회 이상 상담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입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국제입양을 시도할 수 있도록 규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현소혜(2021), 205면;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4년 입양실무매뉴얼』, 2024, 88, 239-240면 참조.
- 77)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국제입양하려는 경우의 그 친생자는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도 국제입양 대상 아동이 될 수 있다(국제입양법 제7조 제1항 제2호).
- 78) 형식적 심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실질적 심사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던 견해로 현소혜(2014), 101, 107-108면; 현소혜(2021), 205-207면 참조.
- 79) 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하며(a항),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한다(b항).
- 80) CRC/C/GC/12, p.3 참조.
- 81) 헤이그입양협약 제4조 d항은 출신국의 권한 당국이 입양 대상 아동 심사를 할 때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다음의 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① 아동이 상담을 받았으며 입양의 효력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만약 입양에 아동 자신의 동의를 필요하다면 그 동意的 효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을 것, ② 아동의 희망과 의견이 고려되었을 것, ③ 입양을 위해 아동 자신의 동意的 필요한 경우에 자발적 의사에 의해 법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동의하였고, 그 동意的가 서면으로 표시되거나 입증되었을 것, ④ 아동의 동意的가 어떠한 종류의 금전 지급이나 대가에 기인한 것이 아닐 것.
- 82) 가령 입양성립 시 아동이 13세 미만이라면 법정대리인의 입양 승낙으로 아동의 입양 승낙을 같음하도록 하고, 아동 자신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입양특례법 제12조 제4항 및 민법 제869조 제2항), 입양허가 심판 또는 친양자입양 허가 심판 시 의견 청취 대상도 양자 또는 친양자될 자가 13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9 및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 이 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하는 문헌으로 김상용(2009), 224면; 윤성승 허남순(2014), 24면; 장병주(2013), 506, 523면; 장복희(2006), 233면 참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제21대 국회에 제출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8198) 제20조에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할 때에는 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진술할 수 없거나 그의 진술을 듣는 것이 그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을 둔 바 있다. 위 법률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가사사건에서의 아동의 의견청취권 보장 전반에 관해 자세히는 현소혜, “가사소송법 개정과 미성년자녀의 복리보호강화”, 법조 제66권 3호(2017), 386-398면 참조.

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법 제28조는 입양을 취소할 때에도 “양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아동의 의사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기초해 대법원규칙 제3조 제1항은 입양 관련 재판에서 아동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근거조문을 마련하였다. 입양 허가 및 그 취소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할 때에는 널리 양자가 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것이다. 더 나아가 대법원규칙은 입양 허가에 앞서 임시양육결정 및 그 취소결정을 할 때에도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그 적용 범위를 법보다 확대하는 한편(제3조 제1항), 구체적인 의견 청취 방법에 관하여도 규정하였다.<sup>83)</sup> 다만, 아동의 의견 청취는 아동권리협약 제12조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아직 의사가 형성되지 않은 영아의 경우까지 그 의견을 청취할 필요는 없으며, 진술의 반복이나 위압적 분위기 등으로 아동의 정서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라. 비영리의 원칙

아동권리협약 제21조 d항 및 헤이그입양협약 제32조 제1항은 국제입양으로 인해 관계자들이 부당한 재정적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됨을 선언하고 있다.<sup>84)</sup> 수익창출에 대한 기대로 인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양구조가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입양법 제4조 역시 이러한 각 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법에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입양특별법 제5조 제1항과 제2항은 이러한 비영리

의 원칙을 국내입양에까지 확대하여 동일한 취지의 조문을 두었다. 국내입양의 경우에도 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로 인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입양 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 원칙을 국내입양에까지 확대하여 규정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국내입양특별법 제5조 제3항은 ‘비영리 운영의 원칙’이라는 표제 하에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른 입양 외에 사인 간에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의뢰·알선 또는 조장·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함께 두고 있다.<sup>85)</sup> 우리나라는 입양의 통로가 민법에 따른 입양 및 친양자입양과 국내입양특별법에 따른 보호 대상 아동의 입양으로 나누어져 있어 보호 대상 아동 입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절차로 우회하여 특별법상의 각종 요건을 회피할 위험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판례는 입양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해 민법상 친양자입양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sup>86)</sup> 현실에서 민법상 일반입양이나 친양자입양이 청구되었을 때 막상 해당 아동이 국내입양특별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보호 대상 아동인지를 법원이 판별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친생부모 기타 아동의 보호자나 입양 브로커 등에 의한 국내입양특별법 잠탈 행위를 보다 확실하게 막기 위해서는 처벌 규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나, 아쉽게도 법은 처벌 규정을 두지 않았다.<sup>87)</sup>

〈다음 호에 이어짐〉

83) 즉,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종합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되, 아동의 심신 발달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문, 가사조사관의 조사, 상담위원의 상담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택할 수 있다(대법원규칙 제3조 제2항).

84) 이 점에 대해 자세히는 현소혜(2021), 190-191면 참조.

85) 이는 국제입양법이 국제입양에 관해 동일한 취지의 조문을 ‘비영리 운영의 원칙’에 관한 제4조 대신 ‘국제입양의 원칙’에 관한 제3조 제3항에 두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

86) 대법원 2022. 5. 31.자 2020스514 결정. 한편 입양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해 민법상 일반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바로 이를 기각하기보다는 입양특별법상 입양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인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로 현소혜, “개정 「민법」상 입양과 「입양특별법」상 입양 — 체계정합성의 관점에서—, 가족법연구 제27권 제1호(2013), 89-90면 참조. 위 대법원 결정 역시 입양특별법상 요구되는 서류 등을 갖추지 않고 청구한 경우에 친양자입양 허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므로, 결론에 있어서 위 견해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87) 이는 현행 입양특별법 제44조 제1항 제2호가 입양기관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알선 업무를 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 신민법 제정과 1차 가족법 개정 1948~1962

### 제3장 민법에 남녀평등을 담기 위한 노력 (1)

#### 1. 여성계 민법 수정안 국회 제출

여성계는 공청회 이후에도 국회 심의를 겨냥해 진정서 및 청원서 공세를 활발히 진행하는 한편, 여성단체들의 입장을 기초로 한 친족상속법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친족상속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 이에 미 국무성의 초청을 받은 이태영은 1957년 8월 24일 출국해서 미국 법조계를 둘러보는 한편 재미교포들을 설득하여 '재미 워싱턴 한인여성유지 일동' 이름으로 '친족상속법에 관한 진정서'를 민의원 의장 앞으로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한데 뜻밖에도 9월 24일, 남편인 정일형 의원으로부터 이번 회기 안에 친족상속법이 상정될 것 같다는 편지가 왔다. 그리고 장화순으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편지가 날아들었다. 이태영은 즉시 정광현 교수에게 편지를 써 "친족상속법 수정안을 만들어 정일형 의원이 제출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하고 여성계에도 편지를 써 이를 독려했다. 우선 장화순에게 "첫째, 정일형 의원에게 여성계 수정안을 내게 하고, 둘째, 여성들이 나서서 운동하라. 난 지금은 돌아갈 수 없다"라는 회신을 보내고 워싱턴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청원서를 내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때마침 이태영은 '미국의 소리' 방송국에 있던 황

재경 목사로부터 출연 제의를 받은 길에 태평양 건너 한국에 있는 남편 정일형 의원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전파를 이용해 중요한 메시지를 띄우게 된다.

제가 당신을 위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것은 당신이 나의 남편이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평등사상에 입각해서 남녀평등을 실현시켜 줄 분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권자들 중에서도 여성들이 당신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사실을 상기하시고 이번 개정안을 제출할 기회에 저와 여성유권자들에게 진 빚을 갚으십시오. 이 법안이 통과 안 되면 저는 다음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이 개정안을 반대한 의원 명단을 기록해 두었다가 다음 선거 때 전 여성이 들고 일어나 선거운동에 반영시킬 것입니다. 역사의 눈, 그리고 인류의 절반,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여성의 눈이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멀리 미국에 가서까지 운동을 독려하고 전략을 추진한 이태영의 열성에 힘입어 여성계는 두 달 만에 여성들이 원하는 수정법안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57년 11월 28일 여성계가 만든 수정안이 '민법안 중 친족상속편 수정안 및 이유서'라는 제목을 달고

\*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이 1948년 9월 15일 구성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마련한 '민법 중 친족상속편'의 남녀차별적 성향을 지적하고 이의 개정을 위해 나선 데 이어 상담소는 창설 당시부터 가족법 개정운동을 주도하여 동성동본 금혼 폐지와 호주제 폐지를 관철하였다. 이러한 가족법 개정운동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률구조 사업과 나란히 상담소의 주요한 사업으로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06년 창립 반세기를 맞은 상담소는 기존의 '상담소 30년사'와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를 정비하기로 하고 2009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와 『가족법개정운동 60년사』를 펴낸 바 있다.

앞서 <가정상담>에 상담소 50년사를 요약 게재한 데 이어 상담소가 주도하여 우리나라의 주요한 역사가 된 '가족법 개정운동 60년사'를 연재한다.

제안자 대표 정일형 외 33인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되었  
다.(『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자료편 제1부 4 참조)

총 57개 항목으로 된 이 수정안은 여성단체들과 여성문  
제연구원의 건의 및 학계 의견을 빠짐없이 반영한 것으로  
여성계 수정안이라 부를 만했다. 특히 제안자 대표 정일형  
의원은 수정안 및 이유서 머리말을 통해 “본인 외 33명의  
의원이 제출한 민법에 대한 수정안은 우리나라 헌법정신  
존중론에 입각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광현 교수와 여  
성단체들의 제안을 주로 채택한 것이며, 수정 항목 중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과 동일한 것도 적지 않다”고 언  
급했다.

## 2. 정부 민법안에 담긴 보수성

1957년 11월 5일, 드디어 민법안 국회 심의가 제3대 국  
회 제26차 정기회의에서 진행되었다.<sup>1)</sup> 이 회의는 이재학  
부의장의 ‘민법안 상정’ 개회사로 시작하여 법사위 박세경  
위원장의 경과보고, 민법안심의회소위원회 장경근 위원장의  
심의회보고 등으로 이어졌다.

박 위원장은 1948년 법전편찬위원회의 설치와 1954년  
의 정부안 성립과정 및 법사위소위원회의 구성과 그 활동,  
그 결과 탄생한 법사위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이 민법안 통과가 제3대 국회의 최  
대 과제요, 또한 공적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심사보고에 들어간 장경근 소위원장은 공청회  
에서도 밝힌 대로 친족상속편의 입법방침이 순풍미속을 유  
지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인습을 지양하되 현재의 민주주  
의 이념에 가급적 ‘적응’케 하는 데 있음을 전제하고, 민법  
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민법안 원안을 내놓은 정부 측을 대표해서는 당시 법무  
차관 배영호가 제안 설명을 했다. 그는 신분법 입법방침이  
종래 관습법을 정비함과 동시에 신시대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있다고 전제하고, 헌법 이념에 입각한 개인의 존엄성과  
남녀평등을 원칙으로 가족제도 자체가 파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주적 개혁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 제안 설명에 의하면 정부안의 친족상속편 주요 골자  
는 다음과 같았다.

친족상속편에 있어서는 ① 호주의 가족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② 여호주제도를 인정하나 가정적·일시적으로  
하고, ③ 약혼보호를 기도하고(제797조 이하), ④ 성년자의  
결혼의 자유를 인정하고(제800조), ⑤ 동성불취의 원칙을  
유지하고, ⑥ 부부별산제도를 철저히 하고, ⑦ 이성불양(異  
姓不養)의 원칙을 유지(폐기의 오식)하여 이성양자(異姓養  
子) 및 서양자(婿養子)제도를 불인정(인정의 오식)하고 사후  
양자·유언양자를 인정하고, ⑧ 친족회제도의 합리화를 기도  
하고, ⑨ 제사상속은 법률제도로부터 제외하여 관습에 일임  
하고, ⑩ 호주상속은 다만 호주상속권만의 상속에 국한하고  
재산상속과 분리하고, ⑪ 부 또는 처에게 공동상속인 또는  
단독상속인의 지위를 부여하고(제1009조, 제1010조), ⑫  
상속분을 규정하고(제1017조), ⑬ 유언제도를 확립하였다.

다음날인 11월 6일의 심의는 김병로 대법원장의 입법취  
지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김병로 대법원장은 한국전쟁 등  
으로 인해 법안 기초 작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애로점  
을 토로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친족상속편의 입법기초가  
가장 어려웠다는 점을 상세히 피력했다.

그는 우리나라 민족윤리와 사회도덕의 우수성을 확신에  
차서 강조하는 한편, 친족상속편의 입법취지는 상법이나  
형법과 달리 그 민족 고유의 순풍미속을 조장하고 계승시  
키면서 시대의 변화에도 조화를 갖추는 데 핵심이 있음을  
명백히 밝혔다.

김병로의 이러한 보수적이고 전통지향적인 입장은 혼인  
과 가족제도에 대한 견해에서 다시 한 번 남녀차별을 뚜렷  
이 했다. 즉 그는 “남녀동등권이란 사회·문화·교육 등에  
서의 기회균등이지, 가족제도 안에서 동등이란 시대착오”  
라고 뼈기를 박은 후 “우리나라 부계혈통 중심의 호주제도  
와 동성동본 혼인 금지규정을 인류발달 과정의 최고문화”  
라고까지 확대 해석하였다.

이 같은 김병로 위원장의 언급은 당시 법조계가 일시불  
란하게 고수하고 있던 보수주의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  
다. 이를 통해 볼 때 법조계의 상징 같은 김병로 위원장마저  
도 가정의 민주화가 곧 사회와 국가의 민주화로 가는 지름  
길이라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편집부

1) 정광현, 『한국가족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67, 부록편, p.249 ; 국회 속기록 제29호, 1957. 11. 5. 이태영, 앞의 책, p.87에서 재  
인용.

## 가정폭력 양상에도 드러나는 다양한 가족 형태 및 가치관의 변화

- 이혼 보다 별거 택하거나, 자녀와의 관계 재정립 고심 등

### 2022버3\*\*협박 서울가정법원

####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8회, 전화상담 3회,  
집단상담 5회(줌(Zoom)을 활용하여  
화상으로 실시),  
음주문제상담(화상으로 실시) 3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1회  
등 총 20회

#### 상담기간

2022. 7. 13. ~ 2023. 1. 13.

####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지 35년이 경과하였고 부부사이에 1남 1녀(35세, 32세)가 있다. 부부는 성격차이로 많이 다투었는데 부부간 합의로 6년 전부터 행위자는 혼자 오피스텔에서 살고 피해자는 자녀들과 살고 있다. 별거 합의시 1주일에 1회 피해자가 행위자의 거주지에 오기로 하였지만 피해자는 거의 매일 왔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저장강박증이 있어 행위자 거주지에도, 피해자가 사는 집에도 물건을 잔뜩 쌓아두어 이로 인한 갈등과 다툼이 잦았다.

그러던 2021년 11월 사건당일 행위자의 거주지에 온 피해자가 음주한 행위자를 보고 술이 문제라고 하면서 냉장

고 위에 있는 술 저장함을 버리겠다고 하자 행위자가 이를 말리며 밀치고 집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을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경찰 출동, 사건 접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보호관찰과 본 상담소에서의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았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행위자 거주지에 오지 않고 있는데 행위자는 오히려 다툼 일이 없어서 좋다고 하였다. 부부간 소통은 행위자가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근무하는 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녀들 역시 부모의 오랜 불화를 알기에 별거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행위자는 성실하게 상담에 참여하였다. 자신이 결혼 5년 이후부터 술을 많이 마시고 밤새워 화투도 치는 등 불성실했던 점과 그런 자신 때문에 피해자가 직장까지 찾아왔는데 자신의 잘못보다 피해자의 행동을 크게 느끼면서 사이가 점점 멀어졌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또 집단상담에서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 이혼한 사람 등 여러 사정을 가진 구성원들을 접하며 자신의 사정은 그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을 생각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다.

종결상담시 행위자는 피해자와 왕래하지만 지금처럼 별거하며 지내겠다는 생각이 확고하였고, 피해자도 마찬가지로였다. 행위자는 피해자와의 관계만족도를 사건 당시는 0점, 현재는 10점 만점에 6점으로 평가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감정도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회복되었음을 보고하였으며, 향후 다투지도 않고 폭력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 2022버1\*\*\*특수폭행 서울가정법원

### 상담진행

행위자(아버지) 개별상담 6회, 교육강좌 2회(줌(Zoom)을 활용하여 화상으로 실시),  
집단상담 4회(화상으로 실시)

등 총 12회

### 상담기간

2022. 7. 22. ~ 2023. 1. 20.

###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딸, 23세)의 아버지이다. 행위자는 2022년 4월 사건당일 거실에서 휴대전화 음량을 크게 틀어놓고 음악을 듣던 중, 피해자가 '집에 혼자 사는 거냐'라고 하는 말에 시비하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블루투스 스피커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폭행을 하여 이웃이 경찰에 신고, 사건 처리되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서울가정법원에서 본소에 6개월간 상담위탁 되었다.

사건발생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관계가 서먹해졌지만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전화하여 집 밖에서 만나 대화하면서 화해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에게 미안하다고 하였고, 행위자도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였다.

행위자는 자녀들에게 '친구같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였는데 '친구'가 되어 버린 것 같다고 하면서,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기로 계획하였는데 구체적 실천방법 중 하나로 불필요한 농담을 자제하기로 정하였다.

행위자는 배우자와 큰 갈등은 없으며, 사건발생 후 법적 절차를 거쳐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이 배우자 및 피해자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이 정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행위자는 대화법 특히 부모자녀간 비폭력대화법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었고, 집단상담을 통하여 관계원리 및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기회를 가졌다.

종결상담에서 행위자는 피해자의 욕설 때문에 본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버지인 자신의 책임이 90%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전부터 피해자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는데 사건 후 2~3일은 나빴지만 지금은 10점 만점에 8~9점으로 평가할 만큼 좋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귀가 시간과 관련하여 귀가가 늦어지는 경우 카톡으로 소통하기로 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하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향후 폭력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 2022버8\*\*폭행 서울가정법원

### 상담진행

행위자(아내)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3회,  
집단상담 4회(줌(Zoom)을 활용하여 화상으로 실시)

등 총 11회

### 상담기간

2022. 7. 29. ~ 2023. 1. 9.

###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남편)와 결혼한지 17년이 경과하였고 부부사이에 1녀 1남(17세, 15세)이 있다.

행위자는 2019년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여 용서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에게 믿음이 가지 않았고 관계가 서먹해졌다. 피해자는 6개월 정도 잘 생활하더니 또 외도를 했다. 그리고 2021년 피해자는 회사를 옮기면서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행위자 명의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내다 주말에만 집에 왔다. 이러한 별거로 인해 부부관계는 더 멀어졌다.

본 사건은 2021년 11월 사건당일 피해자의 거주지를 방문한 행위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외도 사진을 보고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찍으려 하자 이를 빼앗으

려는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의 상반신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 때리는 폭행을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서울가정법원에서 본소에 6개월간 상담위탁 되었다.

행위자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상담시 가정폭력에 대해 이해하고 상담에 성실히 임하였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이혼을 요구하며 여전히 오피스텔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 1주일에 1회 아이들과 식사하고 그때 행위자도 동행한다. 생활비를 주고 있어 경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피해자는 행위자와 둘만 있을 때나 전화통화를 할 때 이혼을 요구하고 욕도 하는데 행위자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미루고 있다. 행위자는 피해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고,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미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표현하였다.

이에 상담에 참여하면서 본인의 상황과 바라는 바를 점검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행위자는 상담을 통하여 마음을 많이 가라앉혔고,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폭언을 하는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고 대응할 정도로 내적 역량을 향상시켰다. 또한 자신이 이혼에 대한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혼할 것이라면 그 시기가 너무 늦어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상담자의 의견을 구하였다. 이에 이혼 결심이 서지 않았다면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결국 이혼에 이를 것이라면 일정 시한을 정하여 준비하도록 조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하며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2025년 9월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진행 현황 〉

구분	프로그램명	날짜	참석인원	주제	강사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별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차연실 상담위원 / 천다라 상담위원
	음주문제 집단상담	9/5	6명	음주와 뇌	김혜선 교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9/12	7명	음주와 공동의존	
		9/26	6명	음주와 회복	
가정폭력행위자 성행교정 프로그램	개별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연중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 차연실 상담위원 / 천다라 상담위원
	집단상담	9/3	7명	관계의 정석, 이런 괴짜도 있을수 있다.	이서원 대표 (한국감정케어센터)
		9/17	7명	관계의 정석, 한 대로 받는다.	
		9/24	5명	관계의 정석, 다르게 하면 다르게 된다.	
	동지교실	9/10	67명	과도한 자기중심성, 자기애성 성격장애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음주문제 집단상담	9/5	18명	음주와 뇌	김혜선 교수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9/12	16명	음주와 공동의존	
9/26		16명	음주와 회복		

# 어떻게 할까요?



## 친 권 ②

- 생존친이 정해진 기간 내에 친권자지정청구를 못한 경우라도 후에 친권자지정청구가 가능하다

**Q** 문 11 | 저는 수년 전 성격차로 이혼하면서 전남편의 강압과 경제적 사정으로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남편은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도 못하게 하여 연락이 끊겼는데 전남편이 1년 전 사망하고 아이의 큰아버지가 후견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아이를 데려와 양육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혼 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친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친권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자신을 친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909조의2 제1항), 귀하의 경우 사정에 의해 이 기간 내에 청구를 하지 못하여 일단 후견인이 선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녀를 위하여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양육상황이나 양육능력의 변동, 미성년자의 의

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 친생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09조의2 제6항). 따라서 귀하는 이제라도 가정법원에 친권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귀하가 친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양부모가 사망한 후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Q** 문 12 | 저는 17세입니다. 친부모가 이혼한 후 입양되었는데 양부모가 모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양부모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자 그 소식을 들은 친부모가 서로 저의 친권자가 되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폭력적인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저의 친권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가 저의 친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A**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2항). 이 때 가정법원은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동법 제912조). 따라서 가정법원에 친권자지정을 청구할 경우, 가정법원은 아버지의 폭력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에 보다 더 적합한 어머니를 친권자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후 지정된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친권자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Q** 문 13 | 저는 비혼모로서 아이 아빠를 상대로 인지와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하여 아이의 생부를 밝히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사망하게 되면 아이 아빠가 친권자가 되는지요?

**A**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sup>1)</sup>(민법 제909조의2 제1항, 가사소송법 제44조). 따라서 자녀의 친부는 단독친권자인 귀하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자신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위 친권자지정청구가 생존하는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9조의2 제4항). 또한 가정법원은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민법 제909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친권자가 지정되거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09조의2 제5항).

●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간 이해상반행위**

**Q** 문 14 | 저희 부부의 17세 된 아들은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제 사업의 자금이 부족하여 아들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용자를 받아 자금을 융통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친권자가 자기를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미성년 자녀의 소유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친권자와 친권에 따르는 자 사이에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해상반행위의 경우 친권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녀의 이익을 희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친권자에게 공정한 친권행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제1항).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공동친권자의 한 사람인 귀하의 아내와 공동하여 대리하게 됩니다.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2024) 중에서

1) 친권자지정청구에 필요한 서류 :

친권자지정 심판청구서, 기본증명서(자녀, 생존친 또는 청구인 각1통), 가족관계증명서(자녀, 생존친 또는 청구인 각1통), 혼인관계증명서(생존친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자녀, 생존친 또는 청구인 각1통), 폐쇄기본증명서(사망한 친권자), 폐쇄가족관계증명서(사망한 친권자), 주민등록말소자등본(사망한 친권자) 등 입증자료



**Q** 저는 2010년에 외국인 아내와 국제결혼하였습니다. 아내는 귀화하지 않았고, 5년 전에 본인 나라로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현재는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혼하려는데, 아내와 연락이 되지 않아도 가능한지요? 또한 아내가 본인 나라에서 사업 목적으로 채무를 지게 되었을 경우, 아내의 채무를 저도 함께 갚아야 하는지요?

**A** 귀하께서는 외국으로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된 아내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송달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이는 공시송달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송달이란,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귀하가 서류를 갖추어 소장을 접수하시면 법원은 아내에게 소장을 송달하게 되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아내가 소장을 송달받아야만 소송이 개시됩니다.

그러나 귀하는 아내의 주소·근무 장소를 알지 못하고, 송달을 외국에서 해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공

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주소 불명, 국외송달 등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을 뜻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5조). 이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법원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국내는 2주일, 외국의 경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따라서 귀하께서는 재판상 이혼 소장을 제출할 때 공시송달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귀하는 아내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장소가 불명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한편, 일상적으로 혼인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때문에 아내가 채무를 진 경우에는 남편에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27조 제1항, 제832조). 그러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아내의 채무가 혼인생활 유지에 쓴 빚이라고 보기 어려울 때에는 남편이 법적으로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고현희 상담위원

## 〈어쩔수가없다〉

감독 박찬욱

출연 이병헌, 손예진, 이성민, 염혜란, 박희순, 차승원



25년 경력의 제지 전문가 만수(이병헌)는 회사에서 ‘올해의 펄프맨’으로 뽑힐 만큼 성실하게 일했다. 아름다운 아내 미리(손예진)와 귀여운 아들딸, 반려견들과 함께하는 삶은 ‘다 이루었다’고 자부할 만큼 행복하다. 하지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진다. 회사가 미국 쪽 자본에 흡수된 뒤 대대적인 권고사직(이라지만 사실상 해고)이 행해진다. 괴로워하던 만수는 반드시 석 달 안에 재취업하겠노라 다짐하지만, 오랜 경력에 걸맞은 높은 월급을 받는, 게다가 특수 분야의 전문가인 중년 남성 관리직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많지 않다. 그는 1년 넘게 마트 등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면접장을 전전하고, 급기야 그의 드림 하우스마저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미리는 집을 팔자고 제안한다. 그것만은 막고 싶은 만수는 건실한 회사로 꼽히는 ‘문 제지’를 무작정 찾아가 보지

만, 반장 선출(박희순)에게 굴욕만 당한다. 결국 만수는 무서운 결심을 하기에 이른다. 나를 위한 자리가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취업에 성공하겠다는 결심.

박찬욱의 〈어쩔수가없다〉는, 띄어쓰기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은 제목만큼이나 촘촘하게 딱 붙어서 숨돌릴 틈을 주지 않는 노동의 현실을 노골적이리만치 파고든다. 도널드 웨스트레이크의 1997년작 범죄소설 〈엑스(Ax, 도끼)〉의 무시무시한 농담과 분노와 좌절의 결합을, 박찬욱은 1990년대 중반 미국과 2020년대 한국의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증명하며 그대로 재현해낸다. 무엇보다 미국의 가족 중심주의가, 여기서는 지난했던 현대사를 거치며 굳어진 가족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태도와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결합되며 한층 기괴해진다. 소설 속 버크 데보레와 영화 속 만수는 끊임없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살인을 저지른다.

베트남전 참전용사인 만수의 아버지는 이후 대규모 돼지 농장을 운영하다가 전염병 때문에 살아있는 돼지 2만 마리를 땅에 묻고 창고에서 목을 뗐다. 만수는 아버지가 경험한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를 자신이 어떻게든 새롭게 재건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로 떠나야 했던 과거의 집을 되찾고, 하나하나 손수 수리하고, 아버지가 죽었던 창고를 온실로 개조하고, 아버지가 남긴 권총을 장식장 맨 위에 곱게 모셔둔 채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한다, 물론 그에게도 잊고 싶은 과거가 있다. 알콜중독에 가까우리만치 술을 마셔대다가 질식해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고, 아내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게 잠시 학대에 가깝도록 모질게 굴었던 시기도 있었다.

지금의 만수는 아버지(들)의 죄를 짓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듯이 가족들에게 과도한 사랑을 쏟는 ‘연기’를 거듭한다. 노동자이자 아버지인 남자는 가난한 한국사회를 떠받치고 부흥시켜왔다고 ‘믿어지는’ 신화의 주인공 같았지만, 지금은 아슬아슬한 피의 토대 위에서 무너져가는 가족을 가까스로 지탱하는 것만으로도 버겁다. 돼지를 묻었던 땅에 지금은 사람이 묻혀 있다. 산 채로 강제로 목숨을 뺏긴 생명체들이 매장당한 땅 위에서, 아등바등 일자리를 잡아채려 범죄를 불사하는 가장의 뒷모습은 이미 스스로도 죽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단 한번도 해본 적 없는 것 같다. 직장에서 잘리는 것은 ‘모가지’라는 단어로 통용된다. 그는 해고됐고, 이미 모가지가 잘린 자다. 죽어 있지만 자신이 죽었음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세계에 남아 있기 위해 발버둥치는 만수의 시도는, 박찬욱이 의도적으로 끌어온 것으로 여겨지는 유현목 감독의 영화 <오발탄>의 레퍼런스와 함께 탄식을 불러일으킨다. 실직 이후 계속 충치에 시달리면서 치과에 가지 않고 버티는 만수와, 남들의 말을 카랑카랑하게 따라하며 허공을 향해 내뿜는 만수의 어린 딸은 <오발탄>의 가장-큰아들과 노모(아무 맥락 없

이 “가자!”를 외치는 스산한 할머니)를 떠오르게 한다. 정말,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가. 어디로든 갈 곳이 없는가.

자본주의의 압박은 너무나 거세고 촘촘하고 비열하고 부지런하게 인적 자원들을 구석으로 몰아넣으며 하나씩 배제하는 방식으로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미안하다, 어쩔 수가 없다’라고 외면하고 휩 가버리는데, 그에 대해 노동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다’고 되뇌며 동료들, 잠재적 경쟁자를 (은유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죽여버리는 선택이다.

덧붙이자면, 이 모든 끔찍하게 웃기고 짜증나게 불쌍한 인간들의 발버둥을 숨막히게 아름다운 화면으로 담아낸 김우형 촬영감독의 카메라는 이 영화의 백미기도 하다.

김용언 영화칼럼니스트





## 동물의 호의에는 이유가 없어서

악어, 나귀 그리고 들퐁이 보여준  
날들에 대해

김동영(김줄스) 지음

인북, 2025(초판 1쇄)



꽤 오래전의 일이다. 시장에 가는 골목길에서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커트 머리의 소녀가 옆에  
지나는데 무엇인지 모를 위화감이 들었다. 슬쩍  
보니 소녀의 어깨에 연초록 이구아나 한 마리가  
살포시 앉아서 산책 중이었다. 동화 같은 한 장면,  
소녀는 사랑스럽고 이구아나는 귀여웠다. 귀여운  
파충류와의 첫 만남!

고양이를 처음 키운 것은 이 십몇 년 전이었다.  
그때만 해도 고양이 진료가 가능한 곳을 따라 독  
립문으로, 약속동으로 한 시간 넘게 운전하며 병  
원에 다녔다. 이동장 속의 고양이는 병원에 가는  
내내 찡얼거렸는데 신기하게도 집에 오는 길에는  
잠잠했다. 시간이 흐르자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고양이 진료가 쉬워졌고 병원에는 강아지 대기실  
과 별도의 고양이 대기실도 생겼다. 우리 막내 고  
양이는 말년에 신부전 예방약과 혈압약을 먹어야  
했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다녔다. 가까운 거리지만  
차를 탔고 집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울어댔지만 집  
에 오는 길에는 조용했다. 집에 가는 것을 아는 것  
처럼, 고양이도 가족과 집을 인지한다.

요즘은 남의 집 동물들에게 관심이 많다. 양어  
장 하는 집의 고양이 무리, 진돗개 가족 유튜브를  
구독하고 청둥오리 일리, 셔틀랜드습독 비바, 양  
양이와 염소라는 이름의 양들, 독특한 품종의 닭  
인 쪽이네, 나귀 일가, 공작과 공작부인 등으로 구  
성된 집도 유튜브 구독을 한다. 그리하여 저녁 시  
간이면 거의 강원도 홍천의 가물치 연못에서 김줄  
스가 집을 짓는 과정을 본다. 땅을 파고 배관을 묻  
고 욕실 부근에는 단차를 두고 콘크리트를 붓는  
것까지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다. 일리와 비바네  
집이다. 그 집의 주인 김줄스가 책을 썼다. 제목에  
지극히 공감이 갔다. 『동물의 호의에는 이유가 없  
어서』, 일방적인 내적친밀감에 그리고 유튜브를

잘 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 지은이는 전혀 모르겠  
지만 - 소식을 듣자마자 책을 사고 공감과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며 읽었다.

지은이 소개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인생의 기억  
나는 매 순간마다 동물과 있었다. 수의대에 갈 성  
적이 되지 않아 열여덟 살 때 동물무역회사 ‘줄스’  
를 창업, 아프리카 가나에서 희귀 어류를 수입한  
것을 기점으로 동물이 조금 더 많아졌다. 지금은  
사람보다 동물이 더 많은 강원도 홍천에 귀농해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키우고 있다. 영상도 만  
드는 중이다.”

고3 때, 서울의 아파트 3평 자기 방에서 희귀동  
물 수입을 시작했던 청년이 강원도 홍천에서 생태  
연못과 동물의 집을 짓고 지내기까지의 기록이 흥  
미롭고 감동적이다. 알게 된 것과 동감이 된 것이  
여럿 있지만 그중에서 동물을 키우는 것과 종의  
보존이라는 관점은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었다.

“생존과 번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이 동물  
을 키우는 것이 종 전체에게 나쁠 것은 없다. ...  
사람이 키우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 그 종은 절대  
로 멸종하지 않고 후세에 남을 것이다. 그러면 그  
게 나쁜 것인가?” - 『악어 키우는 김줄스』 중에서  
강원도로 귀농한 지은이는 강원도 사람과 기업  
의 성장에도 관심이 많다. 몇 차례 경험 끝에 쇼핑  
몰도 운영한다. 요즘 이곳에서 고구마도 사고, 멜  
론과 단감도 산다. 가격은 합리적이고 품질은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다.

기성세대로써 딱딱한 한국의 교육과 사회 현실  
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젊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좋아서 가물치 연못 가족들의  
내내 평안을 빌게 된다.

이숙현 편집부장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연수를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지난 여름방학 본소에서 연수를 진행한 대학생들의 소감을 요약해서 싣는다.

### 정 다 현

이화여대 사회교육학과

저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자 두 달 간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실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습기간 동안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여러 면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은 활동은 여러 상담 및 법교육프로그램 참관과 법률구조 연수입니다. 먼저, 상담 및 법교육프로그램 참관을 통해 내담자들의 말에 경청하면서 다양한 가정의 형태와 가정 내 어려움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여성 자조모임의 속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정 내 불화와 폭력을 극복해나가는 피해여성들을 보며 저 역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전화상담 안내 업무를 통해 여러 가정사의 내담자들을 접하면서 큰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럴 때마다 저의 목표를 다시금 기억해내며 의욕을 다져가는 동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법률구조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법조인으로서의 책임감 및 의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를 앞둔 시점에서 흔치 않은 기회를 통해 뜻깊은 2개월을 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고, 법률구조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음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 권 수 민

동국대 법학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수활동에 참여하며 실제 현장에서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실습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느낀 점은, 법률은 특정 상황에서만 작동하는 특별한 장치가 아니라,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 삶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 틀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 경험이 거의 없었기에, 그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상담소를 찾는 내담자들의 사례를 보며, 경제적 어려움, 가족관계의 변화, 가정폭력 등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법률적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연수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소장 작성 실습은 소송구조 의뢰서를 바탕으로 양육비심판청구서와 재산명시, 이행명령 신청서 등을 작성하며 실습생들과 다 함께 의논하고 공부한 경험으로 이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간 상담소에서 활동을 통해 배운 법률적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판례를 찾아보며 생생한 법학 공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가정법원에서 소송관련 서류 작성 참관 역시 기억에 남습니다. 이를 통해 상담소가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상담소의 업무가 분주하게 돌아갈수록,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었고, 그러한 일에 일부라도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 권 수 진

동국대 법학과

전화 상담안내 실습을 통해 가사 사건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고 가족법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강의안이나 책에서는 보기 힘든 실질적인 내용들이라 매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담소 업

무 실습을 통해서 직장생활을 위한 기본 역량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담소에서는 상담 업무 외에도 법원이나 검찰에서 위탁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보호처분 제도의 실제 운영 방식을 이해하게 되었고, 참여자의 소감을 통해 장단점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서울가정법원 상담 참관도 유익했고 실습생을 배려해 다양한 과제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현장실습을 통해 ‘남을 돕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뿌듯하고 즐거운 일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 김 산 하

동국대 법학과

상담소와 가정법원 상담 참관을 경험하면서, 법이 모든 이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때로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냉정하고 가혹하게 체감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은, 무지하거나, 행사할 능력이나 여건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공평이 아니라 불평등으로 느껴질 수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가정법원 상담 참관에서 고령의 내담자에 특별한정 승인신청서 작성을 도왔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간단한 한 장의 서류 작성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신적 불안의 해소와 안도, 권리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체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구조 사업이 사회적 약자에게는 너무나도 높은 제도의 문턱을 넘도록 돕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고, 어려운 환경의 내담자에게는 생명줄과도 같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학부에서 더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에서 필요한 곳에 손 내밀 수 있는 법조인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 김 시 연

동국대 법학과

직접 참관하는 경험을 통해서 어렵게만 느껴지던 법과 법적 절차들이 머릿속에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사 사건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정말 다양한 사유로 이혼이 진행된다는 점과 상속 관련해서 많은

분이 상담을 받으신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상속 관련 절차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 출근할 때는 가정의 평화가 곧 사회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상담소를 운영한다는 한 국가정법률상담소의 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연수를 마치는 지금은 상담소의 믿음에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평화를 위해 상담소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다양한 업무들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상담소에서 보낸 시간을 통해 많이 성장했습니다.

### 백 선 하

동국대 법학과

참관과 실습을 통해 법학 공부의 의미와 법학에 대한 흥미를 되찾았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실습은 쉽지 않았지만, 4주차의 마지막 날까지 업무에 익숙해졌다 싶으면 새로운 일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상담소 실습의 힘든 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경험하기 위해 지원한 제게 다양한 실무를 접할 수 있는 것이 매우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상담소 선생님들께서 잘 지도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7월 4주간의 실습을 무사히 뿌듯함 속에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도움 주시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 이 승 렬

동국대 법학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수에 참여하기 전, 저는 실무 현장에 대한 큰 기대와 남다른 설렘을 안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과 법률적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가까이에서 목격하며,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에 깊이 공감해 왔던 경험은 제가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화 상담안내 연수를 통해 내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단순히 법적 쟁점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내담자의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 심리적 위로가 된다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의미가 컸지만 무엇보다 가정폭력사건의 상담보호처분관련 실습을 통해 이론으로 학습하던 '사례'가 아닌 피해자 개개인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현실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상담참관과 서울행정법원의 재판 방청을 통해 재판이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의 삶과 권리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깊이 실감했습니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선생님들의 말씀 또한 제 가치관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힘든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원망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도움의 손길에 감사할 줄 아는 자세이다." "법률상담은 단순히 사건 해결을 넘어 내담자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도록 돕는 과정이다. 법은 종이에 적힌 규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 속에서 숨 쉬고 작동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법조인과 법 집행자라면 누구든 법에 근거하여 상담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면서도, 저에게는 특별히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법률 지원을 단순히 권리 구제의 수단으로만 이해했던 저의 관점을 넘어, 피해자의 회복과 삶의 재건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법률 지원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성찰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연수를 마무리하며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법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명제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법률적 조언을 넘어선 공감과 이해,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피해자를 돕는 일은 단순히 법조문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한 개인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과정임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 경 현

동국대 법학과

저는 지금까지 배워왔던 법이 실무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항상 의문이 있었는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하며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법 조항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과 닿았습니다.

업무에 조금 익숙해지려 할 때 실습을 마무리하게 된 것

이 너무나도 아쉽지만, 그만큼 한 달 동안 더욱 많은 업무를 연수하고, 많은 내용을 학습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장 민 정

동국대 법학과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상담소가 단순히 법률적 지식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심리적 지지와 사회적 안전망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법률 지식 외에도 공감과 경청의 태도, 책임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지 못하는 곳에서 정말 많은 가정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소가 이들을 상담과 법률 지원, 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우며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것을 보며, '봉사의 정신'이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 정 지 민

동국대 법학과

연수활동을 시작하기 전, 제가 1학년 시절 막연히 '사람을 법으로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 때보다 조금 더 공부한 학부생의 수준으로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담도 있었지만, 법률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고, 단순히 이론으로만 접하던 법률 지식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배우고 싶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또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이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활동하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 아는 것을 빠르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법, 매일 근무 일지를 작성하며 스스로를 점검하는 습관, 그리고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까지 앞으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능력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 그리고 계속 배우고 익히려는 자세는 앞으로 중요한 삶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갈 클리닉 II」 개강

9월 1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학기 개설 과목 「리갈 클리닉 II」 수업을 개강하였다. 본 과목은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으로 가정법률 관련 현장인 본 상담소에서의 상담 참관과 가사 소송관련 서류 검토,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습득하고 리갈 마인드를 함양하며 법률구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업의 구체적 내용은 강의, 법률상담 참관(본 상담소 및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내 본 상담소 상담실), 상담참관 사례 발표와 토론 및 강평으로 구성되며,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과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가 팀티칭 방식으로 진행한다.

본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9월에 4주간의 강의를 수강하고, 9월 29일 부터 11월 10일까지 본 상담소와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내 본 상담소 상담실에서 상담을 참관할 예정이다.

### 등지교실 - 균형의 상실, 경계선 성격장애

가족의 정신 건강과 행복한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지교실」이 지난 9월 10일 본소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강연은 인하대학교 황순찬 교수가 ‘균형의 상실, 경계선 성격장애’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강사는 경계선 성격장애가 감정 조절, 충동성, 대인관계, 자아상 등에서 극도의 불안정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

히 극단적인 관계 패턴을 반복하고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특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원인을 크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서 특히 어린 시절의 외상 경험, 즉 학대, 방임, 가정폭력(특히 성적 학대)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격장애에는 근본적인 약물 치료제가 없으며, 약물은 보조적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리치료와 당사자의 노력이며, 치료의 출발점은 스스로 자신의 성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 했다. 아울러 주변인들은 당사자를 직접 ‘해결’하려는 시도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한 치료 과정을 지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 경계선 성격장애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으며, 문제 해결의 핵심이 결국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다음 「등지교실」은 10월15일 ‘누적된 스트레스의 범람, 공황장애’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 직원재교육 실시

#### 업무 역량의 향상을 위한 함께 하는 문화적 충전

상담소는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업무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강의, 문화적 경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인 직원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업무 과정의 피로도를 낮추고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와 업무 역량을 향상하여 더 내실 있는 법률구조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재교육은 지난 9월 24일 본소 8층 강당에서 ‘함께

영화 보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함께 본 영화는 법정 영화의 고전으로 알려진 시드니 루멧 감독, 헨리 폰다 주연의 1957년 작품 <열두 명의 성난 사람들>이다. 제7회 베를린 국제 영화제 황금곰상 수상작인 이 작품은 열두 명의 배심원이 하루 동안 한 소년의 살인사건에 대해 토론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각자의 상황과 처지, 관점에 따라 사건에 대한 입장이 정해졌으며, 그것이 어떻게 논의되고 입장이 변화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주요한 흐름이다.

영화의 포스터에는 '생명이 그들 손에 달렸다 - 그들의 머릿속에는 사형 뿐이다' 라고 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현대 법치 제도의 원칙을 제대로 보여준 영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한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가볍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상담소 직원들로서는 생각해 보고 새겨볼 만한 주제였다.

### 한화손보와 업무협력 관련 의견 교환 모임

지난 9월 12일 한화손보 통합마케팅 파트에서 본소를 방문하여 법률유투브 콘텐츠 제작의 방향 및 주요 내용에 관한 의견 교환을 하였다. 한화손보에서 조은숙 과장과 강지혜 대리 등 7명이 참석하였고 본소에서는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조은경 상담위원, 김민선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다.



## 2025년 9월 상담통계

<b>총 건수 4,968</b>		
<b>법률상담 (4,208)</b>		
면접	전화	인터넷
1,200	2,844	164
<b>화해조정</b>	<b>소장 등 서류작성</b>	<b>소송구조</b>
558	62	140

• 인터넷 정보 이용 149,508 건

2025년 9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4,968건이었다.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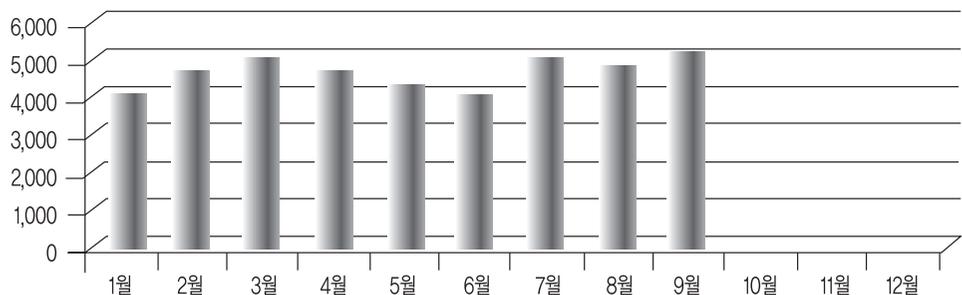
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4,208건(84.7%), 화해조정 558건(11.2%), 소장 등 서류작성 62건(1.2%), 소송구조 140건(2.8%)이었다.

법률상담 4,208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5년 8월에 비해 남녀관계(0.2%→0.5%), 부부갈등(2.9%→4.1%), 위자료·재산분할(5.0%→6.4%), 양육비(7.1%→7.4%), 면접교섭권(1.2%→1.7%), 친생자존부(1.3%→1.4%), 입양(0.9%→1.1%), 혼인무효·취소(0.3%→0.4%), 부양

(0.7%→0.8%), 유언·상속(7.1%→8.5%), 개명(0.8%→1.1%), 가사절차(2.6%→3.4%), 가사기타(11.5%→17.1%), 임대차(0.1%→0.2%), 채권·채무(0.4%→0.5%), 파산(0.9%→1.6%), 개인회생(0.1%→0.5%), 형사절차(0.1%→0.2%)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4,208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200건(28.5%), 전화상담 2,844건(67.6%), 인터넷상담 164건(3.9%)이었다.

2025년  
월별  
총건수



## 출장 상담 및 법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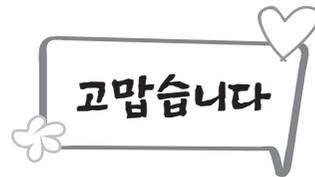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진행 중이다.

###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전규선, 천다라, 박효원, 고현희, 박재영 상담위원  
김민선, 박슬기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9월 15일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2025 법무수요조사 가족분야 전문가 인터뷰를 목적으로 본소를 방문한 박성훈 법무혁신연구실장, 신승범 형사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오민지 부연구위원, 손은아 조사연구위원 등과 자문회의를 하였다. 16일에는 대검찰청 주관 양성평등위원회에 참석하여 2026년 대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19일은 법무부 주관 검찰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22일에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갈클리닉Ⅱ수업에서 가족법 개정사 및 법률구조사를 주제로 강의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9월 1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갈 클리닉Ⅱ」 수업에서 본 상담소 소개 및 가족법 개요에 대하여 강의하였고, 22일에는 상담 참관 및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강의한 후 학생들과 상담 참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9일부터는 상담 참관 지도를 하였다. 10일에는 차연실 상담위원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처분전 교육 간담회에 참석하였으며,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본소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사건 처분전 교육에서 월 1회 강의를 담당할 예정이다. 16일에는 복미영 상담위원과 함께 한국여성변호사회 문혜정 변호사(법률사무소 정)와 정소연 변호사(중앙N남부 법률사무소)를 맞이하여 「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 공신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 2025년 9월 자원봉사자

###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유문숙, 이병주 님

### • 야간상담을 해주신

강종협, 김소이, 이승주,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님

### • 대학생 자원봉사

강명재, 강미현, 고은진, 고종현, 권수현, 권예지, 김규민, 김다현, 김민호, 김서연, 김성현, 김세준, 김소영, 김예지, 김온유, 김윤주, 김은빈, 김주현, 김준우, 김지민, 김지원, 김지은, 김현서, 김홍울, 남승현, 박민건, 박재연, 박지수, 서지혜, 신이주, 신재원, 안세현, 양은진, 오극찬, 유현지, 윤상철, 윤지아, 이운섭, 이정인, 이채린, 임지윤, 장주원, 장진혁, 전영서, 전예란, 정예린, 정 윤, 조예진, 조희서, 주예진, 최관주, 최민지, 최예은, 최윤영, 최은지, 최지원, 최하늘, 최하은, 하유지, 한사랑, 한성주, 한수희, 한아름, 허경민, 황보선우, 황유선 님

## 후원 고맙습니다

###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최문원, 이현혜, 천정환, 서효빈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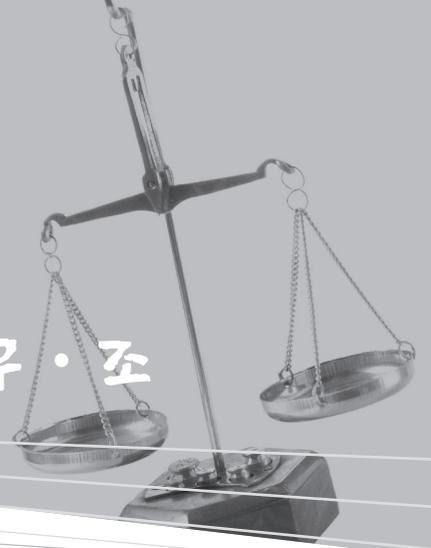


###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 아내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남편과의 이혼 조정

법률구조 2024-1-243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60대)와 피고(남, 70대)는 2009년 혼인 신고하였으나, 2016년 협의이혼하였고, 2017년 재결합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부터 다툼이 잦았고, 그럴 때마다 피고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가 일정 기간 이후 사과하며 집에 들어오기를 반복하였다. 당시 피고의 폭행도 있었으나 원고는 이혼할 생각이 없어 피고의 가정폭력을 신고하지 않다가 2016년경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였다. 그 후 2017년경 피고가 다시 잘해보자고 하여 재결합하였으나 피고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 피고와의 다툼이 지속되어 2023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2024년경 피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에게 화를 낸 후 원고가 취침하려고 자리에 눕자 죽이겠다고 하면서 원고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두 번 세계 밟아 골절 상해를 입혔다. 원고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는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임시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로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서울가정법원 2025. 6. 25.)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 한다.
  - 가.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나. 그 외에 현재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각 채무도 각 명의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상기 조정조항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도 제기하지 않는다(부제소합의).

4. 원고는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4-1-406

담당 : 원의림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30대)와 피고(여, 30대)는 2018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원고는 2019년 러시아에 해외노동자로 파견되었다가 휴대폰을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와 자유, 인권에 대해 알게 된 후 2024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이다. 피고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바 없기에 현재에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 삶을 시작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5. 8. 2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 대한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25-1-99

담당 : 김소이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50대)과 피신청인(남, 50대)은 2000년 혼인하여 그 사이에 1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2018년 재판상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양육비가 13,500,000원에 달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를 지급 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수원가정법원 2025. 9. 19.)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원가정법원 2018. 4. 27. 선고 2017드단\*\*\*\*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으로서, 이 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지급양육비 13,500,000원을 지급하라.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양육비 심판 없이 이혼한 비양육자와의  
과거 양육비 조정

법률구조 2025-1-116

담당 : 장성민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50대)과 상대방(남, 50대)은 1995년 혼인하여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2015년 재판상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양육비에 관한 판결은 받지 않았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지급하

지 않았다. 청구인은 혼인기간 중에도 상대방이 가출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이 많았고, 이혼 후에도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느라 많은 채무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청구인은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5. 8. 26.)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1,4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8회 분할하여 2025. 10. 12.부터 2028. 1. 12.까지 매월 12일에 50만 원씩 지급한다. 만일, 상대방이 위 분할지급금의 지급을 2회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잔액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 등재된 부녀관계를  
친생부인의 소로 바로 잡음

법률구조 2025-1-169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친생부인

내용 : 사건본인(여, 5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여, 30대)와 피고(남, 40대)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원고와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원고는 2016년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피고의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왔다. 피고와 별거 중이던 2018년경 원고는 사건본인의 친부를 만나 교제하였고, 2019년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미루고 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출생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사건본인은 원고가 피고와 혼인 중 출산한 자녀이기에 피고의 자녀로 추정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의 자녀로 등재되었다. 이에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잘못된 부녀관계를 바로잡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인천가정법원 2025. 9. 12.)

-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 2025년 10월 교육부

##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하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시청
- ▶ 일시 : 매주 평일 상시
- ▶ 강사 : 본소 상담위원

##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방법 및 장소 : 대면강의, 본소 8층 A 강의실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정	강의 제목
11월 13일	갈등의 해소와 함께 살아가는 법

##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 관련 법률·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 출장 법 교육

###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 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 교육일정 및 강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 등시교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3시 ~ 5시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행 : 이서원 대표(한국감정케어센터) 황순찬 초빙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정	강의 제목	강사
10월 15일	누적된 스트레스의 범람, 공황장애	황순찬 초빙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1월 12일	시간의 멈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12월 10일	끝없는 도피, 중독	

##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 과정
- ▶ 연수기간 : 2026년 1월 13일(화)~15일(목), 1일 5시간, 3일간
- ▶ 이수시간 : 18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전국 초·중·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zoom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 교과과정
  - 가족법 :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 / 혼인 관련 법률 / 이혼 관련 법률 / 부모·자녀 관련 법률 / 후견 관련 법률 / 상속·유언·유류분 관련 법률
  -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법률
  - 가정폭력 관련 법률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주택 임대차 관련 생활법률
  -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관련 법률

##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행복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6년 7월 중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 장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1644-7077 F: 02-780-0485 홈페이지: www.lawhome.or.kr E-mail: edu@lawhome.or.kr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 우리 가족 행복캠프

##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삼성생명 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상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시 ▶

2026년 7월 중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 화상상담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화상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신청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야간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8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  
전화상담 및 문의 1644-7077

### 다문화가정을 위한 야간 영어상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8시  
접수는 오후 7시까지(사전 예약 필수)  
사전예약 및 문의 1644-7077

[www.lawhome.or.kr](http://www.lawhome.or.kr)